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3년 8월
碩士學位論文

한·중 FTA의 쟁점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朝鮮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박 광 필

한·중 FTA의 쟁점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ssues and the Counter Plan of
FTA between Korea and China

2013년 8월 23일

朝鮮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박 광 필

한·중 FTA의 쟁점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朴魯慶

이 論文을 經營學碩士 論文으로 提出함.

2013년 4월

朝鮮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박광필

박광필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委員長	조선대학교 교수	<u>李濟烘(인)</u>
委 員	조선대학교 교수	<u>金錫珉(인)</u>
委 員	조선대학교 교수	<u>朴魯慶(인)</u>

2013년 5월

朝鮮大學校 大學院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2
제2장 한·중 FTA 추진의의와 현시점 양국의 무역현황	4
제1절 한중 FTA 추진의의	4
1. 한중FTA추진 의의 및 필요성	4
2. 한중FTA에 대한 양국의 입장	8
제2절 현시점 양국간 무역현황 및 무역장벽	14
1. 현시점 한·중 간 무역 현황	14
2. 현시점 한·중 간 무역장벽	16
제3절 한·중 FTA의 추진배경 및 추진현황	21
1. 한·중 FTA의 추진배경	21
2. 한·중 FTA의 추진현황	23
제3장 한·중 FTA의 주요쟁점 및 예상효과	31
제1절 한·중 FTA 주요쟁점	31
1. 상품에 대한 주요쟁점	31
2. 서비스에 대한 주요쟁점	41
3. 투자에 대한 주요쟁점한	44
제2절 한·중 FTA가 양국에 가져다주는 예상효과	46
1. 모형 및 시나리오의 구성	46
2. 거시경제 효과 분석	47
3. ASEAN,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 주는 영향	54
제4장 한·중 FTA의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	56
제1절 한·중FTA의 상품에 대한 대응방안	56

1. 중국이 상품에 대한 대응방안	56
2. 한국이 상품에 대한 대응방안	58
제2절 한·중FTA의 서비스에 대한 대응방안	61
제3절 한·중FTA의 투자에 대한 대응방안	64
제5장 결론	67
참고문헌	68

표 목 차

<표 2-1> FTA대상국가 선정 기준	6
<표 2-2> 중국대한국의 무역적자 추이	11
<표 2-3> 한국의 주요 FTA 체결현황 요약	11
<표 2-4> 중국의 주요 FTA 체결현황 요약	13
<표 2-5> 수교전 한국의 대중국 무역규모 추이	14
<표 2-6> 수교이후 한중 무역규모의 변화 추이	16
<표 2-7> 중국의 대한민국 반덤핑	17
<표 2-8> 한국의 대중국 업종별 반덤핑 규제 현황	19
<표 2-9> 한국의 주요 FTA 체결현황 요약	25
<표 2-10> 중국의 주요 FTA 체결현황 요약	30
<표 3-1>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가격비교	35
<표 3-2> 중국노동인구 비율 변화	37
<표 3-3> 한국의 WTO/DDA 인력이동(Mode4) 양허 현황	43
<표 3-4> 한중 FTA가 중국의 GDP와 후생에 미치는 영향	48
<표 3-5> 한중 FTA가 중국의 GDP와 후생에 미치는 영향	49
<표 3-6> 한중 FTA가 한국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51
<표 3-7>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업종별 효과	52
<표 3-8> 한·중 산업 생산액 변화	53
<표 3-9> 한중 FTA가 일본, 아세안, 대만의 산업별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55

ABSTRACT

A Study on the Issues and the Counter Plan of FTA between Korea and China

PIAO GUANGBI

Advisor: Prof. Park Ro-Kyung Ph. 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Chosen University

Export is an important economic growth strategy in Korea. Korea is strongly dependant on external trade. Bilateral trade between China and Korea has grown rapidly in recent years. China is now our first-largest trading partner. Thus,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FTA) in Korea's foreign trade operations is very important. Now days, It can be said that the safety of foreign markets is the key point of in Korea. Discussing positively bout the Korea-China FTA is very necessary to improve economic developmental potential in Korea.

Multilateralism and regionalism in the new world trade order have been accelerated by competing among the countries. The main disputes with establishing the FTA with China were analyzed and the corresponding economic strategies were presented in this paper.

The Korea-China FTA can promote continued trade liberalization, induce structural reforms in the economies concerned in Korea, and widen market access

across a vibrant economic region in China, where the demand for greater interregional trade is rapidly increasing.

It is hoped that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 will become dynamics of that in Korean by investing efficiently in China.

The resulting market fragmentation would be more costly even for major multinational companies because of rising transaction costs and regulatory barriers. The flow of our courtly's direct investment and the associated transfer of technology and know how to smaller economies would also decline.

Whether or not the Korea-China FTA was correctly grasped will have a great effect on various industries in Korea.

In order to discuss specifically Korea-China FTA, to carry out university industry cooperation as soon as possible and to grasp existed obstacle factors of Korea-China FTA, mutual position between Korea and China need to be considered. All Kinds of cooperations and negotiation issues can be discovered and used by political , academic and commercial means.

All deviating insecurity induced by increasing in chinese dependence can intensify the Korea-China FTA.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미국발 금융위기고 미국을 중심으로 가치를 확산하고자 했던 세계 질서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더 이상 역전이 어려워 보인다. 오바마 정부는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흐름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지구적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발전될 것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이 국가를 대체하는 국제정치 경제의 기본단위로 등장하거나 보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이 정권의 성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을 추구한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노무현 정부가 그토록 FTA추진을 반대하던데서 FTA를 기획하고 추진한 것도 이러한 현실 인식이 있었던 것이고, 시민사회도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원래 자유무역지대는 무역 자유화의 걸림돌을 방지하기 위해 출현한 세계무역질서의 한계에서 비롯 되었다. 실제로 세계무역 기구는 자유무역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발효 된지 한 달 가까이 되고 있는 한·미 FTA는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넘어 금융, 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 노동과 환경 등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일부 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표준'을 바꾸면서 한국 사회의 지형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휘발성을 지닌 이슈이다. 이런 점에서 쇠고기 문제로 야기된 '촛불정국'은 국민의 건강주권 문제를 제기 한 것이었으나 , 그 본질은 한·미 동맹과 한·미 FTA 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양보 할 수 있다는 국가에 대한 저항권의 표출이기도 했다.

한·미 FTA 가 발효 됨 에 따라 전위적으로 다른 국가와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중 FTA추진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과감하게 추진하던 한·일 FTA가 이른바 '독도 문제'라는 암초에

걸려 협상이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고 상대적으로 한·중 FTA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미 한·중 양국의 산관학 협의가 사실상 종료되었고 2008년 5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동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공동 성명에 포함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는 협상 개시 여부보다는 어떤 수준에서 어떤 부문을 주고 받을 것이라는 실무적이고 시간의 문제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국가 간 FTA 체결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FTA를 통해 시장에 대한 여향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에 능동적으로 진출을 확대하자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 하면 한중 FTA를 한·일, 한·미 FTA와 비교하기보다 순수하게 북한 변수를 감안한 중국 변수만 놓고 고려해도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언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한중 FTA체결은 한국의 농수산업분야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또 한국의 부품산업 등 가공무역은 세계적으로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통해 관세를 많이 감면받고 있으므로 단순히 서비스산업 등을 제외한 범용상품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해 중국과 조건부협상을 맺을 경우, 한국 측에 실익이 별로 없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은 필요하나 노동집약적 산업 서비스 산업, 농업 등 다방면에서 객관적인 손익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야 한다.

본 논문은 한중 FTA체결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현재 상황을 심분 반영하여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진행하는 한중 FTA협상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한·중 FTA협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한·중 FTA의 주요 업종에 대한 영향과 그 대응책들을 모색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한국무역협회와 정부와 관련사이트, 그리고 단행본 등 각종 논문들을 참고로 작성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는 한국과 중국과의 산업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상호 보완적 발전의 길을 탐색하기 위해 한중 무역 교류의 현황과 구조적 특성 및 한국과 중국의 산업구조를 기초 통계 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구조적 후

생 보완을 증진시켜야한다. 이 와 같은 목적을 통해 본 연구는 중국의 통계연감 및 한국의 기초 통계 자료 등의 1차 자료를 조사하고 활용하여 한중 FTA 대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를 진행 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서술하고 연구의 방법 및 구성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중 FTA 추진의의와 현시점 양국의 무역현황을 서술하고 한중 FTA의 추진 필요성을 서술하고자한다.

제3장에서는 한중 관세구조 비교 및 평가 비교를 통해서 한중 관세율 구조가 현시점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문제점을 서술하고자한다.

제4장에서는 현시점 한중 FTA 추진현황 와 경제적 효과를 연구하므로 한중 FTA가 이후 미래 한중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 하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므로 써 한중FTA를 추진하는데 대응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한중 FTA 협상에서는 매우 신중한 경제적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며 한중 FTA는 자유무역 뿐 만 아니라 투자 및 서비스 등 다양한 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가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한·중 FTA 추진의의와 현시점 양국의 무역 현황

제1절 한·중 FTA 추진의의

첫째, 한·중 FTA는 중국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을 증강할 수 있다.

둘째, 한·중 FTA를 통해 현재 중국내 진출 2만개 한국기업 및 40만 명에 달하는 한국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중국의 대한 투자가 확대 될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을 겨냥한 미국·유럽 기업에 대한 투자 또한 확대할 수 있다.

넷째,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를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한편, 긍정적으로 한반도 평화 안정 및 통일에 기여하게 된다.

다섯째, 한·중 FTA를 체결하면 한국은 주요 강대국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로서 역동적인 경제 허브(hub)의 역할이 가능하다.¹⁾

1. 한·중 FTA추진 의의 및 필요성

1). 한·중 FTA 추진 의의

오늘날 세계경제는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 국경을 초월하는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1990년대 초반부터 자유무역협정(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FTA의 확산 추세는 무역 강국으로 한국과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FTA의 체결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

자원과 기술이 부족했던 한국은 수출의 증대를 통한 대외 지향적 성장전력을 구사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지만 금융위기 이후 과거에 비해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중 하나는 주

1) "외교통상부 자유무역 협정" : <http://www.fta.go.kr> .

요 교역국가들의 지역무역협정의 체결로 한국수출상품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의 차별적인 조치를 부과하며 수출환경을 악화 시켰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이자 제1위의 수출 및 해외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여 중국과의 경제통합협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 것은 이미 오래된 사실이며 중국과의 FTA추진을 통해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있다.²⁾

또한 FTA 체결 시 국내제도가 국제기준에 합치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한국의 경제제도가 투명해지고 통상 분쟁 요인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되게 되면서 한국 경제제도의 선진화 필요성이 있게 될 것이다. FTA무역자유화 뿐 만아니라 투자자유화도 포함하므로 역내간의 투자 활성화와 더불어 역외국으로부터의 투자유발 효과가 촉진되므로 해외투자 적극적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미국 일본 EU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로 이들 국가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진출확대로 이해관계가 제고되면 한반도 안정에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이다.

2). 한·중 FTA 필요성

일반적으로 대상국가 선정기준은 경제적 동기, 정치, 외교적 동기, 전략적 동기 및 기타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표1-1).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는 상대국의 시장규모 및 산업구조의 보완과 경쟁관계,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가, 기술이전, 및 경쟁력제고(Enhance) 등을 들 수 있다. 정치 및 외교적 동기에 의한 FTA는 지역안보, 외교적 필요성 및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것으로 미국-이스라엘 FTA와 미국-요르단 FTA를 예를 들 수 있으며, 중국이 ASEAN(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기구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호주, 브라질, GCC(걸프 협력위원회 Gulf Cooperation Council), 등과 FTA를 추진하는 것 즉 자원 확보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이효성 (2010), "한중 FTA추진에 관한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11.

<표 2-1> FTA대상국가 선정 기준

경제적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규모 - FTA의 증가(수직적, 수평적) - 무역장벽장해요인(거리, 통상마찰, 관세 및 비관세 장벽) - 기술이전(상대국의 기술수준, 기술흡수능력) - 경쟁력 제고 - 거대시장접근의 교두보
경제적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조정 비용(민감산업, 노동력이동) - 기회비용 - 행정비용
정치, 외교적 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안보 및 외교적 필요성 - 자원(석유 등)의 안정적 확보
전략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verage 활용가능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제도 개선 - 대상국의 관심

자료 : 박순찬, "한국 FTA 추진의 전망과 과제", [KIEP 세계경제 5월호", 2011, p.78
 대외경제 정책연구원(2004), p.58에서 재구성.

위의 <표 2-1>을 보면 한국은 중국과의 FTA를 맺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경제적 이익 면에서 볼 수 있다. 이 중국은 전세계적으로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크기나 잠재성 등 시장규모에 있어서 미국, EU과 같이 주요한 FTA대상국가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2020년까지 7%의 고성장을 통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하면서 경제 대국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면에서 한반도 주변의 강국이며 동아시아 리더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한국에 있어서 아주 유망한 FTA대상국이며 잠재력이 큰 거대시장으로서의 중국과의 FTA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한국이 추진하고자하는 다른 나라와의 FTA협상에서 지렛대효과(leverage effect :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다줄 수도 있을 것이다.³⁾

한중 FTA가 추진된다고 하면 한국으로서는 경쟁력이 있는 중국거대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한국이 대중무역을 하면서 수출

3) 남영욱 (2004), "한중 FTA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대외 경제 정책연구원, pp.51~52.

시장의 안정성 확보 , 세계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필수적인 단계이며 정치, 외교적 이익으로 놓고볼 때 중국과의 FTA를 통해 정치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한반도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아래와 같이 기대된다.

(1)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크면서 동시에 통상마찰에 따른 리스크가 큰 한국의 입장에서, FTA를 통해 중국과 경제적 동맹관계를 맺는 것은 상호간의 통상마찰 해소와 일방적 보호무역조치 역제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중국시장의 안정적인 확보와 급격한 무역규모의 변화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있어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중국, 일본, 미국, EU, ASEAN 등 거대시장과의 FTA는 우리의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 또는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지역주의 확산에 대한 적극 대응

지역주의 확산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필수적인 일이다. 주요 경쟁국이 FTA를 통해 주요 시장을 확보해나갈 때 이러한 흐름에 뒤쳐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시장접근의 제약 등 미체결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한국이 제외된 상태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FTA가 확대 되는 경우 한국의 수출은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

(3) FTA를 통한 경제성장의 모색

중국정부의 국가별 관세 차별화정책도 한국의 대중국 수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산 기계류에 대해서는 수입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쟁국가인 대만산 기계류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한국의 기계류 수출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기계류에 대한 중국강제 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4) 제도를 실시하기 어려워 중국시장 진출에 애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중간의 FTA는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하여 무역규모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향상에 따른 동태적인 효과를 통해 실질 GDP와 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FTA체결로 역내시장에 대한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제도의 투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역내에 생산거점을 확보하여 확대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4) 상호의존성 심화에 따른 정치, 외교적 이익

FTA체결은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정치적 측면에서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여 정치, 안보상의 이익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 중의 하나인 중국과의 FTA를 통해 정치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한반도 안정에 영향력을 가져다주는 중국의 관계가 새로이 개선되므로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⁵⁾

2. 한·중 FTA에 관한 양국의 입장

한중FTA에 대한 중국의 의도는 경제적 목적 외에 전략적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즉 중국은 한국과의 FTA를 통해 자국의 산업고도화 추구하고 그동안 한중 교역에서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문제를 완화하려는

4)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2003년 5월부터 품질안전관련 인증제도다. WTO가입 전에 중국이 자국산(CCEE)과 수입산(CCIB)으로 나뉘어 운영하는 것이 자국민 우대라는 지적에 따라 두 제도를 2001년 12월 통합해 1년5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실시하는 것이다. 수출기업이 만일 이인증을 받지 못하면 통관이 허가되지 않는 것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벌금480만원(인증 획득후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 160만원)을 물어야한다. CCC를 취득하려면 국내 기업이 중국인증기관(DCBs)에 신청서, 기술 문서와 시험제품을 제출하면 시험기관에서 안전품질검사를 실시한다.)

5) 류명명(2008.12), "한중FTA추진에 따른 경제적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p.19.

목적 외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국제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한편 중국은 한중FTA의 조속한 협상과 체결을 희망하고 있지만 포괄적 협상이 아닌 상품분야를 중심으로 한 낮은 수준의 FTA체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한중간의 FTA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수출증대와 중국시장에서의 유리한 입지확보 그리고 이를 통한 경제성장 동력 확보 및 국민 후생 수준의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반면 , 농업분야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취약산업 분야의 타격과 선진기술 유출 그리고 대 중국 의존도 심화 등 부정적인 우려도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한중 FTA를 통하여 경제적 편익을 얻고 균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상품중심의 협정에서 더 나아가 투자 , 지적재산권, 서비스 산업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분야의 FTA추진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협정으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원책을 마련하여 철저하게 대응해서 충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6)

1). 한·중FTA에 대한 한국의 입장

(1) 중국시장 활용 기회 확대

첫째, 중국은 WTO가입(2002년) 이후 계속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품목별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제품에 실제로 적용되는 중국의 관세율을 조사한결과 수입관세율이 9.69%로 미국(3.5%) 및 EU(5.6%)보다 매우 높다. 그러므로 관세인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국의 고 관세를 피해 이미 중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있어 이런 품목이 해당되지 않지만 그 동안에 중국이 시장을 보호하려고 하는 품목이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은 제품들을 중심으로 나타날 것이다.

둘째, 아세안은 중국과 FTA가 발효 되었고, 대만은 중국과 ECFA를 체결한 후 2011년 상반기부터 FTA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아세안에 진출한 다국적기업과 대만기업이 FTA를 이용하여 한국기업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 가능성이 높

6) 허홍호·정윤세 (2009.12), "한중FTA에 대한 한중양국의 입장", 『경영사학 24호 제24집』, p.251.

다. 중국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중 FTA가 필요하며 적어도 동등한 수준으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인구가 많지만 대부분 중산층이기 때문에 최첨단제품은 아니더라도 중급 이상의 제품에 대한 소비가 많이 형성될 것이다. 한중 FTA를 이용해 중국광의 관세를 인하하고, 다른 국가의 기업에 비해 더 유리한 환경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면 한중 FTA는 한국기업에게 다른 국가의 기업보다 더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한중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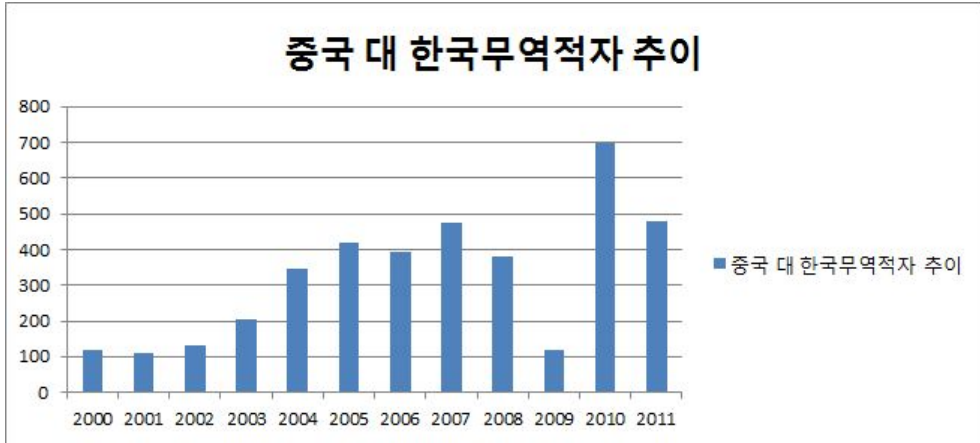
중국은 한중FTA를 통해 자국의 산업고도화를 추구할 것이다. 즉, 국은 선진국과의 FTA 체결로 서비스산업이나 지적재산권 등에서 경제에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며, 기대하는 선진 기술습득이나 FDI(외국인 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유치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과의 FTA 체결은 선진 기술습득과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를 유치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 또한 중국은 한국으로의 농산물 및 일부 제조업 제품의 수출 확대를 통하여 한중 무역수지적자 문제를 완화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통해 중국 동북지방의 개발을 촉진하려는 의도와 한중 FTA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킴으로써 역내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한중 중심의 경제협력체로 쓸리게 하는 'FTA 도미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⁷⁾

한중무역 불균형은 한중 FTA 협상에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다. 중국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중국의 대 한국 무역 적자는 1994년 2억 9,000만 달러에서 2009년 489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2010년 1~9월에는 522억 달러로 2009년 총규모를 초과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이 확대될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대 한국무역 적자는 대부분 자동차, 기계, 철강, 화학공업 등 중국의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⁸⁾ 2000년부터 중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의 추이는 아래의<표2-2>에서와 같다.

7) 허홍호, 정윤세 (2009), "한중 FTA에 대한 한중 양국의 입장", 한국경영사학회, p.11.

8) 박번순 (2012),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국제학술회의", 『Vol.2012 No.5』, p.85.

<표2-2> 중국 대 한국의 무역적자 추이



자료: 중국 해관(海關), WWW.CUSTOMS.GOV.CN

한국FTA 체결 현황

<표 2-3> 한국의 주요 FTA 체결현황 요약

구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협상발효	칠레	2002.10.25 협상 타결 발표~2004.4.1 발효
	싱가포르	2004.11.29 협상 타결~2006.3.2 발효
	EFTA	2005.7 협상타결~2006.9.1 발효
	ASEAN	2005.2 협상 개시, 2007.6.1 상품협정 발효 2007.12 상품협정 태국 타결 2008.1.1 상품협정 필리핀 발효 2008.7.1 상품협정 브루나이 발효 2008.10.1 상품협정 라오스 발효 2008.11.1 상품협정 캄보디아 발효(태국제외 전 국가 발효)
		2009.5.1 서비스협정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발효
		2009.9.1 투자협정 발효(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이행중)
2010.1.1 태국상품협정 및 서비스 협정 가입 의정서 발효		
인도	2006.3.23~24 1차 협상 개시	

		2008.9.22~25 CEPA12차 공식협상 2008.9.22~25 CEPA발효 실질적 타결 2010.1.1 CEPA발효
	미국	2006.6.5~9 제1차 공식협상 개시 2007.4.2 협상 타결 2010.11.4~5 관련 실무협의를 개최 2012.3.15 한*미 FTA발효
	EU	2007.5.7~11 1차 공식협상 개최 2008.5.12~15 7차한*EU FTA 회의 2009.7.13 협상 타결 2010.9.8~10 통상장관회담 개최 2011.10.12 한*EU 무역위원회 개최
	페루	2006.11 민간공동연구 시행 합의 2008.5 민간공동연구 종료 2010.8.30 협상타결 2011.8.1 한*페루 FTA발효
타결	터키	2008.6 양국공동연구 개시 2010.4.26~30 1차 협상 개최 2012.3.7~10 4차 협상 개최 2012.3.26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가서명 2012.8.1 한*터키 FTA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정식서명
	콜롬비아	2009.3 민간공동연구 개시 2009.12.7~9 1차 협상 개최 2012.4.23 6차 협상 개최 2012.6.25 협상 타결
협상	캐나다	2005.7.28 협상개시 2008.3.25 13차 협상
	멕시코	2007.12.5 협상개최 2008.7.8 2차협상
	GCC(6개국)	2008.7.9 협상개시 2009.7.8 3차협상
	호주	2009.5.19 1차협상개최 2010.5.24 5차 협상 개최
	뉴질랜드	2008.9.29 1차예비협의를

		2009.6.8 1차 협상 개최 2010.5.12 4차 협상개최 2011.2.1 통상장관 회담 개최
	인도네시아	2011.5 공동연구 개시 2012.3.28 정상회담에서 CEPA협상 개시 선언합의
	중국	2012.5.2 한*중 FTA 협상개시선언 2012.5.14 한*중 FTA제1차 협상 개최 2012.7.3 한*중 FTA제2차 협상 개최

자료: FTA 종합지원포털, '우리나라 FTA 추진체계', www.ftahub.go.kr

중국FTA체결현황

<표 2-4>중국의 주요 FTA 체결현황 요약

구분		추진현황	
협상발효	CEPA	2003발효 ~ 2004,2005,2006 보충 협의 발효	
	ASEAN	2000.11 협상 타결~2002.11.4 발효	
	파키스탄	2003.11.3 발효	
	칠레		2004.11 협상개시
			2006.10.1 발효 2008.4.13 서비스무역 보충 협의 타결
	뉴질랜드		2008.4.7 타결
			2008.10.1 발효
	싱가포르		2006.8 타결
			2008.9 발효
	페루		2007.9.7 협상 개시
		2009.4.28 타결	
협상중	ASIA-PAC IFIC	1975 방콕 협정 타결 2005.11 ASIA-PACIFIC 개명	
	코스타리카		2008.11 협상 개시
			2010.4. 협상타결
협상중	海合會		2008.4 협상 개시
			2010.1.10 4차 협상
	호주		2005.6.30 협상 개최
			2010.2.24 14차 협상
	아이슬란드		2008.4.11 협상 개최
			2008.4.28 4차 협상
	노르웨이		2007.6 협상개시
		2010.9.14 8차협상 개최	
		2004.6.28 협상개시	
스위스		2011.1.28 협상 개시	

제2절 현시점 양국의 무역현황 및 무역장벽

1. 현시점 한·중 간 무역현황

1). 한·중 수교 이전 무역 현황

한국과 중국은 고대로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양국 국면은 '결빙'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70년대 이후 한중 무역은 '해방' 상태에 들어서게 되기 시작했다. 1973년 한국정부의 "6.23선언"을 통해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한다는 내용에 맞추어 중국에 문호 개방을 표방한 이후 중국과의 교역관계가 시작되었다. 당시 1973년 중국이 대외개방정책을 표방한 동시에 양국간 무역은 주로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일본 등을 통해서만 무역하였다.

<표2-5> 수교전 한국의 대중국 무역규모 추이

연도	총 무역액	대 중국수출	대중국 수입	무역수지
1979	6	0	6	-6
1980	41	15	26	-11
1981	75	5	70	-65
1982	97	6	91	-85
1983	74	5	69	-64
1984	222	17	205	-133
1985	513	40	478	-483
1986	744	123	621	-498
1987	1,077	211	366	-655
1988	2,142	437	1,705	-1268
1989	2,142	437	1,705	-1268
1990	2,853	585	2,268	-1633
1991	4,444	1,003	3,441	-2,438

자료: 한국 관세청 통계자료를 근거하여 정리함 www.customs.go.kr .

<표 2-5>는 수교전 한국의 대 중국 무역규모 추세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3년이후 양국 무역규모는 급속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1년 4444억 달러로 1979년의 6억달러 무역규모에 비하여 741배나 증가 하였다.

한국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은 섬유, 기계, 전자 화학제품 등 공산품이 주종을 이루는데 반면 한국의 수입 품목은 국물, 섬유원료, 광산물 등 1차 제품이 주종을 이루었다.

2). 한·중 수교이후 무역현황

한·중 무역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

1992년 3월 베이징에서 한중수교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두나라 관계는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한중 무역이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92년 한중 수교당시 양국의 무역액은 63억달러에 불과하였지만 2005년 양국의 무역액은 처음으로 천억달러를 돌파하고 1119억달러에 달하게 된다. 2010년 양국무역액은 1334.1억 달러로 수교당시 무역액의 30배나 증가하게된다. <표2-6>참조늘어난 시기이다.

둘째, (1997년~2001년)는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 이후부터 중국의 WTO가입이 이루어진 시기므로 이기간 한국은 심각한 외환위기 로 경제위기를 겪게 되고 중국도 경기불황을 겪으면서 양국간 교역이 잠시 주춤하게된다. 2001년 미국의 경기침체로 IT부문이 급속히 위축되어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대외무역이 일시 둔화된다.

셋째, (2001년~2005년)는 중국이 처음으로 WTO에 가입되면서 2005년 무역규모가 처음 1000억 달러 넘으면서 무역상품 구조도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고도화 가이루어진 시기이다. 이 4년간 한국의 대 중국의 수출 및 수입증가율은 각각 36.1%, 30.6% 로 되었다.

넷째, 2005년하반기부터 현재까지의 단계로서 한중 교역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시기이기도하다. 2005년 이후부터 한국은 대 중국 교역에 있어 수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성장률은 다소 둔화 하였다. 그원인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 의한 대 중국 수출유발효과 가 낮아지고 완제품과 중간재

산업에서 중국의 생산이 확대되며 수입대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2010년부터는 다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2-6>참조 9)

<표2-6> 수교이후 한중 무역규모의 변화 추이
(단위: 억 달러,%)

년도	총 무역액	대 중국 수출		대 중국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2	63.3	26.5		37.3	
1995	163.5	91.4	47.4	74.0	35.5
1997	236.9	135.7	19.3	101.2	13.5
1999	225.5	136.9	14.5	33.7	36.8
2000	325.2	153.3	34.9	128.0	44.8
2001	315.5	136.4	-0.9	133.0	3.5
2002	421.3	235.5	30.6	174.0	43.3
2003	570.5	362.1	48.5	234.2	35.0
2004	795.4	497.6	41.7	295.9	35.0
2005	1005.6	619.2	24.4	336.5	30.6
2006	1130.2	694.6	12.2	485.6	25.6
2007	1450.1	819.9	13.0	630.3	28.6
2008	1633.5	916.4	13.0	769.3	22.1
2009	1409.5	867.0	-5.0	542.5	-29.5
2010	1834.1	1163.4	34.3	715.7	31.9
2011	2,206.1	1341.8	14.3	864.3	18.3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2. 현시점 한·중 간 무역장벽

한중간의 무역은 계속 빠른 성장 과정에 있으나, 무역수지 불균형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는 2001년 중국의 WTO가입 이후 시장의 개방에 따라 중국과의 무역도 추진에 수반하여 중국과 무역 분쟁이 많아 지고있는것고 현실이다. 양국의 분쟁은 주로 세이프가드(SAFE GUARD)문제, 반덤핑 문제, 지적재산권 문제에 집중했다. 그중에서 반덤핑에 대한 제도는 양국간의 무역 분쟁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9) 이천 (2010), "한중무역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p.4~19.

1) . 한 · 중무역에서 반덤핑 · 덤핑 문제에 관한 사례

거래에서의 덤핑(dumping)은 일반적으로 원가이하 판매를 말한다. 즉, 수출품의 가격이 수출국내에서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라 규정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반덤핑(anti-dumping)은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이다. 이때 덤핑 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한다. 어떤 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어 수입국가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10)

(1) 중국의 대한민국 반덤핑

<표2-7> 중국의 대 한국 반덤핑

조사품목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신문용지	1997.12	1998.7	1999.6
폴리에스텔필름	1999.4	1999.12	2000.3
스테인레스스틸 강판	1999.6	2000.4	2000.12
이염화메탄	2000.12	2001.8	2002.6
폴리스티렌	2001.2	-	-
라이신	2001.6	-	-
폴리에스터 칩	2001.8	2002.10	2003.2
폴리에스터 단섬 유	2001.8	2002.10	2003.4
아크릴산에스테르	2001.10	2002.12	2003.4
아트지	2002.2	2002.11	2003.8
무수프탈산	2002.3	2003.1	2003.9
합성고무	2002.3	2003.4	2003.9
내연강판	2002.3	2003.5	2003.9
PVC	2002.3	2003.5	2003.9

10) 네이버 <http://terms.naver.com/> .

TDI	2002.5	2004.6	2003.11
페놀	2002.8	2003.6	2004.2
MDI	2002.9	-	조사중
광섬유	2003.7	-	2004.6

자료:이천, "한중무역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연구", 순천향대학교, 석사논문, 2010, p.33

위의<표2-7>과 같이, 중국의 최초의 한국과 관련되는 반덤핑 사건은 1997년에 발생하고 중국이 한국, 그리고 캐나다산 신문지에 대해 조사했다. 1998년 7월 예비 판정을 하고 3개국의 신문지 덤핑 수출이 중국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공고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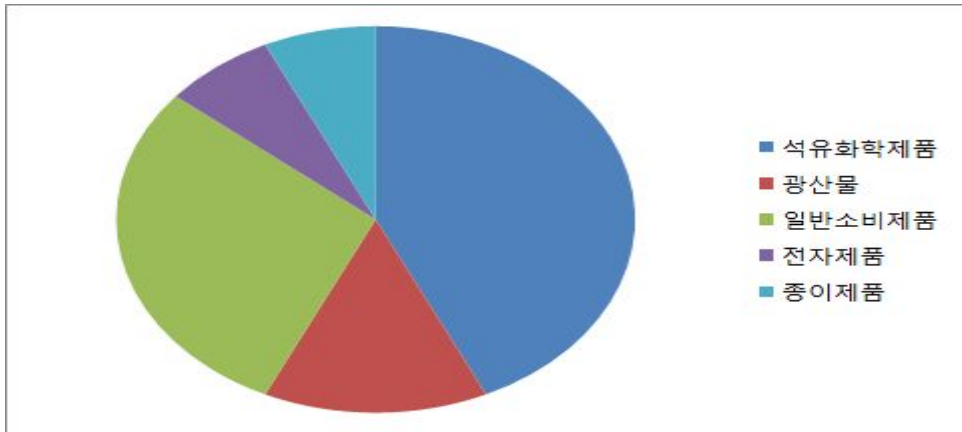
(2) 한국의 대 중국 반덤핑

한국이 처음으로 중국과 관련된 반덤핑 조사 사건은 1991년 2월 중국의 정제린산 제품에 대해 40.5%~54.3% 대항관세를 부과하고 실시 기한은 3년이였다. 2001년부터 한국이 중국에 대한 반덤핑 사건은 증가세를 보일수 있다. 2001년 한국이 중국에 대한 반덤핑 사건은 2건이고, 2002년 3건이였다. 2008년 말까지 한국이 실시한 중국 제품과 관련된 반덤핑 조사와 특별 보장 조사는 각각 20건과 10건이고 양국의 무역관계에 대하여 실질적 위협을 구성했다.¹²⁾

11) 이천 (2010), "한중무역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30-33.

12) 이검 (2010), "한·중 무역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29.

<표2-8>한국의 대 중국 업종별 반덤핑 규제 현황



자료: 이천, 한중무역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연구. 순천향대학교. 석사논문. 2010, p.35

<표2-8>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국의 대 중국 업종별 반덤핑 규제 현황에서 보면, 업종별로 한국의 대 중국 반덤핑 규제는 주로 석유화학제품, 광산물, 일반소비제품, 전자제품, 종이제품 등을 중심으로 하여 석유화학제품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석유화학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기초소재분야에 한국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중국 기업의 견제가 정부를 부추겨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기업이 일정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한국 제품과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는 수입규제의 정도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반덤핑 사건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한·중간 세이프가드 문제에 관한 사례

세이프가드(SAFE GUARD)는 즉 긴급수입제한조치이다. WTO체제하에서는 별도의 세이프가드협정이 체결되어 세이프가드(safeguards or safeguard measures)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 표현되고 있다. 세이프가드 협정에 의하면 이러한 세이프가드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이프가드제도는 넓게 해석하면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국내 산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두 무역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즉,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모두 무역장벽의 설치뿐만 아니라 산업조정 및 지원 등 산업정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제반 무역정책을 지칭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좁은 의미의 세이프가드제도는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이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 경쟁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을 때 GATT제 19조 및 세이프가드협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GATT가맹국의 대응조치를 의미한다.¹³⁾

중국의 마늘 생산량은 전세계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인건비가 싸고 중국의 마늘 가격은 한국의 3분의 1수준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1998년에 중국에서 냉동 창고와 통마늘을 가공해서 깐 마늘로 만들었다. 이러한 깐 마늘을 한국으로 수입하면 관세가 낮아서 마늘 가격도 많이 떨어졌다. 이로인해 1999년 9월 한국 마늘 농가를 대표한 농협이 무역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무역위원회가 피해가 있다고 인정했으며 1999년 11월에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사조제 마늘에 대해 수입관세율을 30%에서 315%로 올리는 잠정긴급과세 부과조치를 취했다. 그 후 무역위원회는 2000년 3월에 최종적으로 산업피해구제를 건의하였고 2000년 5월에 제정경제부는 긴급관세부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와같이 무역 분쟁이 발생한 후 양국정부는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 6월 중국 북경에서 실무 양자협상을 진행하여 7월 15일 최종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한국의 긴급관세가 부과될 앞으로 3년 동안 연간 중국산 마늘 약3만 2000톤에 대해 30%~50%의 저율관세로 수입을 보장하고, 냉동 마늘 과 초산마늘의 경우 쿼터(20,000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315%의 관세를 부과한다. 둘째:중국은 보복조치로 시행한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한 수입중단조치를 해제한다. 2000년 7월에 한국 양국이 "마늘협상안"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통상마찰이 해소되었다. ¹⁴⁾

13) 이천 (2010), 한중무역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p.33-36.

14) 앞 글, p.38.

제3절 한·중FTA의 추진배경 및 추진현황

1. 한·중FTA의 추진 배경

세계무역은 WTO중심의 범세계 자유화 추진과 다양한 지역주의의 심화라는 상반된 두 조류가 공존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질서에 적응해가면서 선진국이 주축이 된 지역경제권 형성에 대응하고자 기존의 지역주의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FTA를 무역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FTA와 WTO협정으로 세계무역 자유화의 최대 수혜국가가 이면서 무역의존도가 70%나 되며 대외무역은 경제발전과 고도성장의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크게 다섯가지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개혁과 개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개혁과 개방 정책을 견지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으로 자유 무역협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자유무역협정은 상품 및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반덤핑, 무역규범 등 포괄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개방하고 있다.

둘째, 지역주의 확산에 따른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 체제에만 의존한다면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FTA는 체결구가 간에만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하므로 그 위험 부담이 그만큼 클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한다는 것이 국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WTO 체제 출범 후에도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내지 심화되어 대부분의 국가가 지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EU의 중동구권으로의 확대 및 FTAA, ASEAN 등의 확대를 통해 재현되고, 인터넷의 영향으로 국경이 없는 범세계적인 경제 네트워크로 빠르게 형성되어가고 있다. 1995년 WTO출범이후 오히려

FTA 체결국가의 수는 증가하고 있고, 세계 통상 환경은 세계화 추세 강화, 다국적 기업의 해외 투자 확대, 지역무역협정(RTA)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경제통합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대내외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948년부터 2007년7월18일 현재 GATT/WTO 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총 364건이다. 이 가운데 124건은 1995년 이전에 통보되었으나, 나머지 240건은 WTO 가 출범한 1995년 이후에 통보되었다.

셋째, 우리 경제의 구조개선 및 국민후생의 증대를 위해서이다.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대외여건의 변화이다. 수출 감소나 국내 경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경기 침체, 반덤핑 조치 같은 무역제한 조치 등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중국이 한국을 제외한 상태에서 FTA를 확대한다면 그 수입선이 한국으로부터 역내국으로 대체되는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큰타격을 받게 될 것이므로 중국과 FTA는 더욱 중요하다.

FTA체결국 간에는 관세장벽이 없어지고 역외국은 관세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체결국은 비체결국에 비하여 교역이 유리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FTA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필수선택의 방법이다.

넷째, 외국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거점지역 확보를 위해서이다. 주요국과의 FTA체결은 국내시장이 역내시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생산거점 기지로 활용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확대하여 역내 시장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역내시장에 수출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FTA체결을 통해 상대 국가의 투자시장이 확대되고 투자여건이 보장됨으로 기업의 안정적 투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FTA체결대상국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시다발적인 FTA추진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체결하게 되면 무역적자도 완화하고 구조조정 비용도 적게들 것이며 여타 국가 간의 FTA 체결 진도도 만회할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이다. 냉전 종식 후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경제를 통합하여 공동의 이해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됨에 따

라 우리나라도 지역경제통합을 형성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치적이거나 경제적 위기 시 자국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로부터 지원과 협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15)

2. 한·중 FTA 추진현황

1). 한국의 FTA추진현황

한국이 적극적으로 FTA 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포괄적 FTA 체결 시 기대되는 경제통상제도 선진화 기회 확보이다.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이 다양하지만, 우리 경제제도의 낙후성이 크게 작용했다. 둘째, FTA 확산과 경쟁국들의 잇따른 FTA 체결에 따라 발생하는 상대적 차별에 기인하는 기회비용의 상승은 한국으로 하여금 지역주의를 포용하게 유도했다. 셋째, 외환위기 발생 이후 한국은 정치,경제적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을 절감했다. 당시 한국 경제가 위기국면을 맞을 정도로 나쁘지는 않았지만 , 태국발 위기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국제사회는 긴급자금 지원을 망설여 결국 한국 정부는 국가부도사태를 선언하게 되었다.

이로써 다양한 형태의 위기가 발생할 경우, 국제적으로 신속한 협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과의 FTA와 같은 제도적 경제협력체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책담당자들이 인식하게 되었다.¹⁶⁾

1998년 3월 단행된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의 외무부가 외교통상부로 개편되면서, 재정경제부, 농림부, 산업 자원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국내 통상 관련 부처의 의견을 총괄 조정하였다. 그리고 태국, 남아공, 터키, 칠레, 뉴질랜드, 이스라엘의 6개국과 공식 및 비공식적 접촉과 연국을 통해 FTA의 한국 수출에 대한 효과, 민감 산업에 대한 효과, 상대국의 FTA체결경험,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칠레를 첫 FTA 대상국으로 선정했다.

15) 외교통상부 통상 교섭본부 (2006), 다자통상국 발표자료, 『KIEP 연구자료 제03-01호』, p.40.

16) 팽욱 (2012), "한중 FTA추진전략에 대한 연구", 제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35.

(1)한 · 칠레

1998년 한국 국무총리 주재 대외경제조정회의에서 칠레와의 FTA를 우선 추진하고 칠레와 유사한 소규모 국가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후 관계부처 합의하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미국, 일본, 중국 등과의 FTA는 정밀 검토후 대외경제조정회의에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17)

1998년 콜라룸푸르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칠레의 Frei 대통령과 11월 17일 양국 정상회의에서 두나라 FTA추진방안을 논의하는데 합의하고 2004년 4월에 발효되었다.

(2)한 · 싱가포르 FTA

1999년 9월 오클랜드 APEC정상회담 기간 동안 개최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싱가포르 고축동 총리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한 · 싱가포르 FTA 추진을 제의하고 2004년 11월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2005년 8월에 정식으로 체결하고 2006년 3월에 효력을 발휘하였다. 18)

(3)한 · EFTA

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FTA는2005년 1월 협상을 개시하여 불과 6개월이 경과한 2005년 12월 15일 통상장관회담을 통해 정식 서명했으며 2006년 9월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4)한 · ASEAN FTA

2002년 11월 ASEAN+3 정상회담에서 김석수 국무총리는 ASEAN 10개 회원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FTA추진 검토의사를 밝혔다. 한국과 ASEAN과의 FTA논의가 개시될 경우 농수산물 수입증가 폭이 커지게돼 한국 내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17) 이종원 (2008), "한·EU FTA현황과 전망 그리고 추진전략", 서울:높이깊이 출판국, p.118

18) 서도 (2008), "동북아 FTA경제의 효과와 정책시발점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56.

28) 송창의 (2002), "한중FTA경제의 효과와 정책시발점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50.

중장기적으로 ASEAN과 FTA를 체결하는 원칙하에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4년 3월 제1차 공동연구를 기점으로 FTA 논의를 시작 했으며 2004년 8월 공동연구를 종료했다. 양측은 2005년 2월 자카르타에서 제1차 협상을 개시했으며 2005년 12월 상품 분야 자유화 방식에 합의하고 2006년 4월 상품무역협상을 타결 시켰으며 2007년 6월 발효 되었다. 2007년 1월에는 서비스분야 협상이 타결 되었으며 2009년 5월 발효되었다.

(5)한·미 FTA

한·미 FTA 체결은 한국 FTA정책에 있어 최대 실적으로 평가된다. 한 미 FTA에 대한 첫 논의는 1980년대 중반 미국 측에 의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한국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공식적인 논의로 진전되지 못했다. 당시 진행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도 힘겨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2006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협상발표후에 2006년 2월에는 한미 FTA협상이 시작되었다. 2011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된 한·미 FTA가 양국 간이행협의를 거쳐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되었다.

(6)한·EU FTA

한·EU FTA는 2007년 5월 제1차 협상을 시작하여 한국 정부는 2년 2개월에 걸친 한국과 EU의 FTA협상을 2009년 7월 13일에 전격적으로 타결시켰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27개 회원국 가지고 있는 EU의 경제규모 세계GDP의 30%에 달하는 EU는 지금까지 한국의 FTA 를 체결한 지역 중 최대 시장이다. 19)

<표 2-9> 한국의 주요 FTA 체결현황 요약

구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협상발효	칠레	2002.10.25 협상 타결 발표~2004.4.1 발효

19) 정인교 (2010), "FTA통상론", 서울출판사, p.303.

	싱가포르	2004.11.29 협상 타결~2006.3.2 발효
	EFTA	2005.7 협상타결~2006.9.1 발효
	ASEAN	2005.2 협상 개시, 2007.6.1 상품협정 발효 2007.12 상품협정 태국 타결 2008.1.1 상품협정 필리핀 발효 2008.7.1 상품협정 브루나이 발효 2008.10.1 상품협정 라오스 발효 2008.11.1 상품협정 캄보디아 발효(태국제외 전 국가 발효) 2009.5.1 서비스협정 미얀마 , 싱가포르 ,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발효 2009.9.1 투자협정 발효(한국, 싱가포르, 베트남 , 태국, 이행중) 2010.1.1 태국상품협정 및 서비스 협정 가입 의정서 발효
	인도	2006.3.23~24 1차 협상 개시 2008.9.22~25 CEPA12차 공식협상 2008.9.22~25 CEPA발효 실질적 타결 2010.1.1 CEPA발효
	미국	2006.6.5~9 제1차 공식협상 개시 2007.4.2 협상 타결 2010.11.4~5 관련 실무협의 개최 2012.3.15 한*미 FTA발효
	EU	2007.5.7~11 1차 공식협상 개최 2008.5.12~15 7차한*EU FTA 회의 2009.7.13 협상 타결 2010.9.8~10 통상장관회담 개최 2011.10.12 한*EU 무역위원회 개최
	페루	2006.11 민간공동연구 시행 합의 2008.5 민간공동연구 종료 2010.8.30 협상타결 2011.8.1 한*페루 FTA발효
타결	터키	2008.6 양국공동연구 개시 2010.4.26~30 1차 협상 개최 2012.3.7~10 4차 협상 개최 2012.3.26 한*터키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

		정 가서명 2012.8.1 한*터키 FTA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정식서명
	콜롬비아	2009.3 민간공동연구 개시 2009.12.7~9 1차 협상 개최 2012.4.23 6차 협상 개최 2012.6.25 협상 타결
협상	캐나다	2005.7.28 협상개시 2008.3.25 13차 협상
	멕시코	2007.12.5 협상개최 2008.7.8 2차협상
	GCC(6개국)	2008.7.9 협상개시 2009.7.8 3차협상
	호주	2009.5.19 1차협상개최 2010.5.24 5차 협상 개최
	뉴질랜드	2008.9.29 1차예비협의 2009.6.8 1차 협상 개최 2010.5.12 4차 협상개최 2011.2.1 통상장관 회담 개최
	인도네시아	2011.5 공동연구 개시 2012.3.28 정상회담에서 CEPA협상 개시 선언협의
	중국	2012.5.2 한*중 FTA 협상개시선언 2012.5.14 한*중 FTA제1차 협상 개최 2012.7.3 한*중 FTA제2차 협상 개최

자료: FTA 종합지원포털, '우리나라 FTA 추진체계' (WWW.FTAHUB.GO.KR/)

2). 중국의 FTA추진현황

중국은 처음부터 FTA에 큰 관심을 가져왔던 것은 아니다. 1991년 APEC 가입 후 상당기간 지역 내 협력에 대한 회의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 했으며 한 때는 아시아통화기구(AMF) 구상에 대한 반대 입장까지 보였다. 그러나 1999년 미국과의 관세약화로 주변국가와의 협력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수동적이던 지역경제통합 추진 전력이 능동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비록 중국의 FTA 추진은 늦게 시작되었지만 진행속도는 매우 빠르다. 2010년 현재까지 중국은 ASEAN,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코스타리카 등과 8개의 FTA 및 CEPA²⁰⁾ 등을 체결하였다. 중국과 홍콩, 마카오 간 경제협력 강화 협정을 통해 완전한 시장 개방을 이루었다. 현재 FTA 공식협상국은 GCC, 호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SACU 등 5개 국가이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 인도 간 FTA체결이 공동연구 중이다.

(1) 중·ASEAN FTA

2004년 ASEAN과의 FTA는 중국이 제안하여 시작한 첫 번째 자유무역 협정이다. 2002년 11월 4일, 중국과 ASEAN은 [중·ASEAN간 전면적인 경제협력기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상품무역부터 관련한 협상을 시작하여 2004년 11월 상품무역 관세인하방식, 민간품목, 분쟁해결 메커니즘 등에 포함하는 [상품무역]과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체결하였고 2005년 7월부터 발효되어 7,000여 가지 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인하 조치가 이루어졌다. 다음 조치로서 2007년 1월 14일 리자오성 중국 외교부장관 ASEAN 10개 국 경제부장이 중·ASEAN FTA 서비스무역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8월 [무역투자협정]을 체결하게 되어 중·ASEAN FTA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²¹⁾

(2) 중·칠레 FTA

중국과 칠레의 FTA 협정은 ASEAN에 이은 두 번째 FTA 이자 남미국가와는 첫 번째 FTA협정이다. 2004년 4월 시작된 중·칠레 FTA는 2004년 10월말에 완료하였다. 공동 연국에 따라 2004년 11월 18일 정부 간 협상을 개시하여 2005년 11월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다. 2006년 10월에 정식 발효되었다.

한·칠레 FTA는 2006년 발효 후 2007년 중국과 칠레 양국 간 무역교역액은

20)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무역자유화를 강조하는 일반적 개념의 FTA에 경제, 기술협력 등 다양한 경제관계를 포함하고 있음.

21) 이기성 (2010), "한중FTA 추진에관한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22.

147억 달러에 달한다. 증가율은 FTA를 체결하기 전의 20%로 2007년의 65%보다 성장하였다. 그중 중국은 칠레로부터의 수입액은 103억 달러로 79%의 증가율, 수출액은 44억 달러로 42%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2009년에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칠레의 제1위 수입국이 되었다. 2010년에 수입액은 98.89억 달러로 60%의 증가율, 칠레의 수입총액의 17% 성장하였다. 22)

3) 중 · 뉴질랜드

중국과 뉴질랜드 FTA협정은 중국이 선진국과 체결한 최초의 FTA이며 아울러 서비스와 투자협상을 포함한 최초의 포괄적인 FTA이다. 이전에 체결된 중국의 FTA협상 대상국들과 같은 개도국들이었으며, 협상의 내용도 상품협상은 체결하되 서비스와 투자협상은 추후 진행하는 방식이다.

중국과 뉴질랜드 FTA는 2003년 양국 간의 FTA에 대한 공동연구에 이어 2005년부터 3년 동안 15차례의 협상 끝에 2008년 4월 7일 FTA협상을 타결하였고 2008년 10월 1일 발효되었다.

(4) 중국 · 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던 대만은 2008년 마잉주 집권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해왔다. 대만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중국과 경제를 도모한다는 노선을 제시했다.

중국과 대만은 2009년 11월 ECFA가 쌍방의 경제발전에 유리하다는 공동연구를 완료하고 2010년 1월 26일 공식적으로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5개월간 5차례 협상을 거쳐 타결하고 기본협정문 제4장 제7조에 조기수확 프로그램을 규정하였다. 중국과 대만의 ECFA는 기보협정 성격으로 발효 후 6개월 이내에 분야별 확대협상을 개시하여 조속히 완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3)

22)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2011 <http://www.mofcom.gov.cn/>.

23) 팽욱 (2012), "한중FTA추진전략에 대한 연구", 제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42.

<표 2-10>중국의 주요 FTA 체결현황 요약

구분		추진현황
협상발효	CEPA	2003발효 ~ 2004,2005,2006 보충 협의 발효
	ASEAN	2000.11 협상 타결~2002.11.4 발효
	파키스탄	2003.11.3 발효
	칠레	2004.11 협상개시
		2006.10.1 발효 2008.4.13 서비스무역 보충 협의 타결
	뉴질랜드	2008.4.7 타결
		2008.10.1 발효
	싱가포르	2006.8 타결
		2008.9 발효
	페루	2007.9.7 협상 개시
2009.4.28 타결		
ASIA-PAC IFIC	1975 방콕 협정 타결 2005.11 ASIA-PACIFIC 개명	
코스타리카	2008.11 협상 개시	
	2010.4. 협상타결	
협상중	海合會	2008.4 협상 개시
		2010.1.10 4차 협상
	호주	2005.6.30 협상 개최
		2010.2.24 14차 협상
	아이슬란드	2008.4.11 협상 개최
		2008.4.28 4차 협상
노르웨이	2007.6 협상개시	
	2010.9.14 8차협상 개최	
SACU	2004.6.28 협상개시	
스위스	2011.1.28 협상 개시	
	2011.4.13 1차 협상 개최	

자료: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www.mofcom.gov.cn)

제3장 한·중 FTA의 주요쟁점 및 예상효과

제1절 한·중 FTA의 주요쟁점

1 상품분야 쟁점과 전망

1) 공산품 양허 협상 쟁점과 전망

공산품 양허협상 전망이 어려운 것은 중국이 지금까지 FTA를 체결한 국가 중 한 국가와 비견될 만한 제조강국이 부재하다는 점에 있다. 최근 대만과 체결한 ECFA가 중국이 유일한 제조강국과의 FTA라고 할 수 있으나, 양안 간 특수관계를 감안할 때 ECFA는 경제논리 보다는 정치적 배경에 따라 협상이 추진되고, 아직 본협상 이전 이므로 한국과 협상에서 모델로 삼기에는 한계가 많다.

결국 한중 FTA 상품양허 협상은 가공무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한중 간 교역특 성 및 현황을 기본으로 협상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국 의 상호 산업적 관심분야, 교역량 및 실질관세율 등이 주로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의 경우 소비재와 같은 관세율이 높은 분야 와 중국 내수시장 진출 을 희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요구사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사항을 감안했을 때, 한중 FTA 공산품 양허협상의 주요 쟁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자동차의 경우, 2010년 현재 중국에 수출하는 완성차는 25%의 관세를, 부품 은 22.5%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를 통한 관세가 삭감 될 경우 지금보다 가격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중국 자동차 시장 에서 미국, EU, 일본 등 경쟁국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국의 자동차 기업은 이미 중국에 대규모 현지 공장을 설립하여 양산 중이므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일부 차종에 만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중국 현지 생산업체의 경우, 부품 관

세가 철폐되면 부품조달이라는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국내 부품업체는 중국 부품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완성차 관 세철폐에 소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은 부품 자유화에 있어 일부 품목 에서 소극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전자산업 분야를 보면, 중국은 전기전자 부문에서 평균관세율 8.8%로 한국의 5.38% 보다 높은 수준이나, 가중평균관세율은 오히려 한국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⁴⁾. 이는 한국의 對중국 수출이 가공무역을 위한 전기전자 부품 중심으로 이루지고 있어, 중국의 관세한급과 낮은 실질관세율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가 전완제품의 경우 희비가 엇갈리는데 중저가 제품의 경우 對한국 수출 증대가 우려 되나, 한국에서 생산되는 고가 가전제품의 수출은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부품의 경우, 반도체 등 정보기술협정(ITA) 대상품목의 경우, 이미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한중 FTA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ITA 협정 의 대상이 아닌 음향기기부품 등 일부 고관세 전자부품은 현지의 한국공장으로 수출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⁹⁴⁾. 특히, 양국 간 교역에서 LCD와 같이 관세율²⁵⁾은 높지 않으나 수출량이 많은 품목의 경우, 관세인하의 효과가 높다 할 것이다.

전자 산업 관련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향후 추이이다. 2010년 6월 타결된 ECFA는 이름 그대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이므로, 후속협상이 2011년 개시될 것이다. ECFA의 조기수확리스(EHP)에는 한국과 핵심경쟁품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만 측은 후속협상에서 LCD와 같은 중요품목을 포함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또한 ECFA로 양안 간 경제협력이 활성화 되면, 자본력을 갖춘 중국기업과 기술력을 갖춘 대만기업이 결합하는 상황도 발생가능하다. 따라서 대만과 전자산업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한국입장에서는, 중-대만 ECFA 후속협상 결과에 예의주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석유화학 부문에서 양국의 평균관세율은 모두 5% 이상으로 비교적 높

24) 이항구, 김성우, 최상미 (2010), "속도 붙은 한중 FTA 논의, 쟁점은?: 자동차, 철강, 전자 분야 실익 예상" 『친디아 저널』, p.47.

25) 앞 글, p.47.

다.

따라서 양측이 석유화학 분야에서 관세를 철폐할 경우 교역증대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對중국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에서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한중 FTA는 對중국 수출 증대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²⁶⁾ 중국은 석유화학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생산설비의 신설과 증설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PTA와 같은 범용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양허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장래에 석유화학 분야에서 양국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나, 아직까지는 한국의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되어 석유화학 산업은 한중 FTA에서 수혜분야로 판단되므로, 양국 간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석유화학 분야도 중-대만 ECFA의 영향이 큰 분야이다. 2009년도 對중국 석유화학제품 수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5위, 대만은 9위를 차지하는 등 양측은 중국시장에서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다. 금번 ECFA 양허안에는 한국 석유화학 수출 주력제품²⁷⁾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후속협상에서는 충분히 논의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철강산업 관련, 현재 중국의 조강생산량 5억 7,000만 톤으로 세계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여 세계 1위 철강생산국 자리를 10년 이상 굳건히 지켜오고 있으며, 양국은 상호 최대 철강 교역국²⁸⁾으로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 對중국 철강수출의 대부분이 가공무역으로 인한 관세환급 대상이 다수임을 감안할 때 실제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는 예상만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²⁹⁾

또한 지금까지 중국은 대체로 철강분야 수출에서 저부가가치 제품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나, 정부지원에 힘입어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 철강산업은 10대 산업 진흥계획에 포함되는 국가 기간산업의 하나로써 중국정부의 지원이 집중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양국이 철강분야에서 경쟁 관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양허협상에서 이익균형을 모색

26) 이항구, 김성우, 최상미 (2010), "속도 붙은 한중 FTA 논의, 쟁점은?: 자동차, 철강, 전자 분야 실익 예상", 『친디아 저널』, p.47.

27) 앞 글, p.47.

28) 앞 글, p.48.

29) 앞 글, p.48.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 농업분야

중국은 한국과 인접해 있고 농산품의 생산시기와 품목이 유사하여 FTA체결 시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이다. 아래 <표4-3>을 보면 중국의 농산물 수출단가와 한국의 노가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 주요 농산물 가운데 양파와 닭고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국산 농산물 가격이 한국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중 농산물 교역의 특징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수출하고 한국은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구조로, 제조업과 달리 산업 내 무역의 확산을 통한 FTA의 이익 공유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약 없는 FTA 체결 시 관세철폐로 한국의 농가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FTA 논의 시 농업부문 개방을 FTA 추진의 제약조건 또는 전제조건으로 인식후 1차 산업의 민감도를 고려한 FTA협상을 통한 국민경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탄력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중 FTA추진 시 농업부문 자유화의 정도가 WTO 다자간 협상 틀 속에서의 시장개방 정도 이상을 넘어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치 및 경제 논리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자간 협상 수준으로 농업을 개방하더라도 중국의 경우 예외적으로 특수한 일방적 협상 수준으로 농업을 개방하더라도 중국의 경우 예외적으로 특수한 일방적 시장접근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FTA추진 시 그이상의 시장개방을 허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품목별 민감도를 측정하여 차별화함에 따라서 FTA가 양자 간 협상으로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의견 수렴 및 통합과정이 중요한바 아주 민감한 품목은 자유화 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한중FTA 시 국내 생산자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를 고려하여 농산물의 개방 정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관세 삭감과 함께 식품 위생기준 검역에 대한 합의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적인 대안은 농업개장수준을 WTO 다자간 협상 결과의 수준에 둔다는 제약조건하에서 양국 경제통합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FTA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0)

<표 3-1>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가격비교

품목	중국수출단가(A)		한국국내가격(B)	상대가 (A/B)
	달러/kg	원/kg	원/kg	
마늘	0.454	507	1,719	0.30
양파	0.227	241	274	0.88
옥계	1.802	1,870	2,962	0.63
돈육	2.496	2,012	6,954	0.29
사과	0.369	390	1,072	0.36
포도	0.786	769	1,356	0.57
복숭아	0.293	328	1,777	0.26
배	0.343	383	5,516	0.22
고추	0.307	464	1,895	0.08
대두	0.34	359	8,236	0.19
참깨	0.94	967	498	0.12
옥수수	0.13	134	-	0.27
밀	0.1	109	2,097	-
쌀	-	357	-	0.17

자료: 유효리, "한중FTA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석사논문, 2012, p.52

한중 농산물 교역의 특징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수출하고 한국은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구조로, 제조업과 달리 산업내 무역의 확산을 통한 FTA의 이익 공유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약 없는 FTA체결시 일방적인 농업 수출확대 및 축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은 아래와 같다. 31)

(1)중국 동북부 지방은 한국과 유사한 농산물의 작목구조 및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내 농산물시장에서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제적 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

(2)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한국을 압도하고 있어 일방적인 교역구조가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3)지리적 인접성으로 농산물 신선도 유지에서 타 경쟁국에 비해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

30) 고나위 (2009), "한·중 FTA체결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51.

31) 부유 (2012), "한중 FTA체결에 따른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72.

(4) 중국의 경제규모가 한국을 크게 상회하여 규모의 효과를 보이면서 일반성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

이 네가지 요인이 서로 상승작용을 통하여 국내 농업시장을 잠식할 경우 한국 농가에 커다란 충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무역지수 분석에 의하면 농업 내부에서 상호 협력적 발전모형을 구축 하는데 한계성이 있다. 따라서 FTA 체결 시 예외적으로 특수한 일방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만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나 농업 특성상 농업인력 및 토지 등 자원이 타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가능성은 전혀 없다. FTA 체결시 농업개방에 집착하는 경우 정치적 리스크 및 사회보장 성격의 농민지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결국 FTA 타결자체를 어렵게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FTA 논의 시 농업부문개방을 FTA 추진의 제약조건 또는 전제조건으로 인식한 후 FTA를 통한 국민경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탄력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³²⁾

곡물, 수산물과 식용채소, 뿌리의 경우 자유화 제외품목으로 선정하는 것이 국내 생산자에 대한 충격 정도를 고려할 때 타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부문에서 중국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생산과 비교할 때 작목구조가 거의 동일하여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민감한 품목이 제분공업 생산품과 식물용 재료, 기타 식물성조제품 일 것이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둔 이후 관세를 철폐하는 방식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충격이 크지는 않으나 국내 사정상 민감한 식용과실, 견과류, 감귤류와 축산의 일부 세부품목의 경우도 일정기간 이후 철폐품목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³³⁾

3). 제조업 분야

32) 조일윤 (2010), "한중 FTA의 주요쟁점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35.

33) 부유 (2012), "한중 FTA체결에 따른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61.

(1) 중국 제조업의 현황

중국은 1970년대 말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래 급속한 공업화와 세계 자본주의 체계의 적극적인 편입을 통하여 "세계의 공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후 1953년부터 5개년계획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산업 육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개혁개방을 시작한 1978년에 이미 중국 제조업 중 중공업의 비율은 60%가까이 이르러 있었다. 1981~1985년부터 시작되는 기간은 그간 계획경제하에서 억눌려 있던 경공업 위주의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이 분야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급속히 높여갔다. 이후 약 25년 간 연평균 거의 10%에 달하는 실질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중국의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인 것에 크게 기인한다 하겠다.³⁴⁾

<표 4-4>와 같이 1981~2012년 기간 중 중국의 산업별 구성과, 취업 인구의 산업별 구성비를 보면, 1차산업 종사자의 비율은 2012년에도 41.5%를 차지하고 있다. 1991년보다는 제2차 노동인구 비율이 28.2% 줄었음에도 중국이 농업 사회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말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3-2> 중국노동인구 비율 변화

(%)

산업	1991	2001	2004	2006	2008	2012
제1차	59.7	50	49.1	44.8	42.6	41.5
제2차	21.4	22.3	21.6	23.8	25.2	26.1
제3차	13.6	18.9	29.3	31.4	32.2	33.5

자료" 중국사이트 <http://www.baidu.com>

(2). 한국제조업의 현황

한국 제조업의 기술수준을 세계 수준과 비교할 때, 제조업은 81.3%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세계적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13.8%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산업의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기업규모결로는

34) 田浩国 (2011), "한중 FTA의 필요성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p.28.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에 대한 외부 시각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 지난해 세계적 금융위기 직후에 한국은행들의 취약성을 부가시키더니 지난 연말에는 한국 제조업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우려하며 성장을 전망치를 앞다투어 하향 조정했다. 최근에는 다시 분위기가 바뀌어 세계경제가 회복되면 한국이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관심은 위기극복 과정에서 한국 제조업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우뚝 설 중국을 넘어설 수 있을지에 모인다.

한국의 제조업이 이러한 장벽들을 뛰어 넘는다면 중국으로의 제조업 이탈과 일자리 감소 같은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다. 단순한 인건비 경감보다 고객 니즈에 대한 대응능력, 각종 낭비를 줄이는 혁신능력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중국의 임금수준이 낮고 중국의 생산여건도 위안화 절상, 신노동법 실시에 따른 인건비 부담증가 등으로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중요한 생산기지 역할을 지속하겠지만 역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³⁵⁾

(3) 제조업부문의 주요 쟁점

1). FTA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FTA의 체결에 따른 상품교역의 자유화는 무역이 과거보다 수월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교역창출을 가져오는 측면이 있으며, 보다 많은 교역창출을 위한 투자창출도 촉진하는 두가지 측면을 가진다. 역내 외국인 투자확대에 따른 역내 외국인 투자유치국으로의 기술이전 촉진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³⁶⁾

중국은 이미 한국의 제1위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지만, 향후 FTA체결시 투자환경의 개선으로 대중국 투자의 증가가 가속화 될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또한 한중 FTA 체결로 중국 또는 다른 국가로부터의 대 한국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35) 임용남 (2010), "한중 FTA의 주요쟁점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43.

36) 田浩国 (2010), p.47.

한편 FTA 체결은 중국으로부터의 투자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의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중국정부의 개혁개방 전략의 실시에 따라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제한도 점차 감소하고 기업의 해외시장개발, 해외자원개발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향후 매우 큰 발전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2003년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대상국 중 4위를 차지하여 중요한 해외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하이닉스 인수와 향후 중국기업의 다국적 활동에서 한국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와 전통이 비슷하기 때문에 중요한 투자대상국이 될 것이다. 제조업, 특히 IT 산업은 중국기업의 대 한국 투자의 새로운 분야가 될수 있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한국이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중국시장 접근성을 보다 선진적인 경영환경을 가진 한국으로의 외국인투자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상정할수 있다. 37)

4) 원산지 협상 쟁점과 전망

양국의 기존 원산지 기준 비교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이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국적)를 결정하고 특혜 또는 비특혜의 일정한 무역조치의 부과를 결정하는 각종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국제 법규, 법률, 행정결정 등 각종 조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규정은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구분되는 데, 전자는 FTA 등에서 특정 국가 간에 주로 특혜부여를 목적으로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을 말한다. 이에 반해 비특혜원산지규정은 특혜 이외의 원산지 인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차별적 적용 없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산지 규정을 지칭한다. 따라서 FTA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혜원산지 규정이라할 수 있으며, 비특혜원산지규정은 주로 WTO³⁸⁾에서 논의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러한 원산지 규정에

37) 부유 (2012), "한중 FTA체결에 따른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 p.72.

38) WTO에서는 특정국가에 대한 수입제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부과,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무역통계작성성 등 무역정책상 물품의 원산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비특혜 원산지 규정을 주로 다루고 있다. (최흥석 외 (2007). 『원산지 이론과 실

대한 협상은 FTA 상품협상에 있어서 상품 양허협상과 함께 핵 심적 분야로 거론된다. 왜냐하면 원산지로 인정받느냐 여부에 따라 FTA 특혜관세 적용대상에 포함되느냐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기업이 수출과 현지생산(투자)에 대한 의 사결정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은 기체결 FTA 협정문의 원산지 규정을 보면 전체적으로 유사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상대국과 교역관계 및 경제적 고려 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양국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 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부여하는 완전생산기준 (Wholly Produced Criterion)과 2개 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결정하는 실질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을 채택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전 세계적 분업체계가 구축된 제조업에서는 실질변형기준이, 농산물이 나 수산물과 같은 1차 상품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완전생산기준이 문제되고 있다. 이 외 실질변형기준에 대한 보충적 기준으로는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rule)³⁹⁾ , 누적 기준(Cumulation) 106) 등이 사용되고 있다.

원산지 분야 예상쟁점 및 협상 전망

원산지 분야 예상쟁점을 살펴보면, 먼저 완전생산기준 관련해서 수산품의 원산지 기준에 대해 논쟁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수산업의 경쟁력이 있는 국가는 완화된 원산지 기준을 주장하겠지만, 경쟁력이 비교열위에 있는 경우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주장할 것이다. 수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경쟁력은 중국이 비교우위에 있음은 명확 하다. 따라서 중국이 완화된 기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반해 한국은 기 국요건과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⁴⁰⁾ 단, 수산업은 한국에 있어서 농산물에 준하는

무』, 한국무역협회, p.9.)

39) 미소기준이라고 한다. 상품생산에 있어 역외산 수입재료를 사용하여도 그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세번변경 기준 등의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원산지를 인정하여,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는 효과가 존재하 는데, 일반적으로 10% 내외의 비원산지 재료의 사용은 허용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2007). 『FTA 원산지규정 활용 가이드』 . 2007, p.12.)

40) 최문, 윤기관 (2009), "한중 FTA 원산지기준의 최적합의안 도출을 위한 양국 기준 FTA 협정의 원산 지 부문 비교연구." 『국제지역연구』, pp.391-416.

민감성을 가진 분야이므로 완강하게 자국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국의 태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산지 기준 관련,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가공무역이 주류를 이루는 양국 공산품 교역관계의 특징으로 인하여, 중국 현지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내 진출한 한 국계 기업, 중국 내 진출한 제3국 외자기업으로부터 수입확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은 자국시장 보호를 위하여 부가가치 기준, 우회방지 규정 등의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을 생산거점으로 활용하는 외자기업의 경우 핵심부품이나 소재는 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향이 짙음을 감안할 때, 중국 내 외 자기업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 정 필요성⁴¹⁾ 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중국이 대응이 주목된다 하겠다.

끝으로 원산지 관련 잔여 핵심이슈는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여부라 할 수 있다.

한국이 경우, 대부분 FTA에서 역외가공조항을 명기하였으나, 중국의 경우 FTA에서 역외가공조항을 인정한 전례가 없다.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과정에서 중국은 개성공단 생산품이 자국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다는 인식 하에 개성공단 제품의 원 산지 인정 여부에 소극적 자세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향후 본격적 협상이 개시될 경우, 개성공단과 관련한 양국 간 대립이 예상된다.

2. 서비스분야 주요쟁점 및 전망

한국과 중국의 FTA 서비스 분야 협상에서는 미래 최혜국대우(이하 미래MFN) 인정여부, 인력이동 및 투자자유화가 핵심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외에 서비스-투자 협정 모델을 둘러싼 논쟁, 제도적 투명성 완화, 관심분야에 대한 양허협상이 이슈로 예상된다. 본문에서는 서비스 챕터의 핵심이슈인 미래MFN과 인력이동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사항의 내용 및 전망에 대해 고찰해보겠다.

41) 양평섭 외 (2008),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KIEP 연구보고서 제07-08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 235~236.

미래 최혜국대우(MFN) 조항의 규정 여부

WTO MFN 규정의 예외인 FTA에서 다시 MFN을 허용한다는 일견 모순처럼 들린다. 실제 상품협상의 경우 MFN이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서비스의 경우 투자와 연결되어 시장개방을 통한 서비스 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등 개방효과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FTA 서비스 챕터에서 GATS와 같이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는 경향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래MFN은 향후 중국이 다른 나라와 FTA 서비스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한중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개방할 경우, 한국에게 자동으로 그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비스 시장의 개방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핵심적 장치로 평가된다. 다만, 무차 별적 MFN을 할 경우 적용범위가 무한대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FTA 서비스 협상에서는 대체로 MFN의 시점을 FTA 협정 발효 이후 즉 미래로 한정짓고 있다.

이와 관련 개도국의 경우, 아직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지 않고, 관련 법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에 서비스 시장이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에 우려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FTA는 교역상대별 차별적 혜택을 나누는 것인데, 자동적으로 특정국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FTA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상당수 국가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미래 MFN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 이후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적 판단 하에 미래 MFN 원칙을 추진⁴²⁾ 하고 있고, 중국과 FTA에서 급성장하는 서비스 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동 규정을 협정문에 명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중국보다 협상력(국력)이 약한 한국이 향후 미국이나 EU 등 거대선진국이 중국과 FTA를 통한 추가 시장개방이 이뤄질 경우 그 과실을 누리고 자 하는 협상전략은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인력이동 협상 전망

42) 한미 FTA 이전 FTA협정에서는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협상에서 미래 MFN을 규정하지 않았다.

중국은 세계최대 인구대국으로서 선진국과 FTA 서비스 협상에서 자국이 경쟁력 이 있는 인력이동 양허협상에 적극적이다. 한중 FTA에서도 중국은 광범위한 전문인 력 이동과 함께 전문인력 이동에 필수적인 전문직 자격증의 상호인정(MRA)의 추진 도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상업적 주재(Mode3)가 자본의 이동이라면 인력이동 (Movement of Natural Person : Mode 4)은 노동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자 는 생산요소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상업적 주재 가 서비스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해외지점 설립과 같이 국경을 넘어 자본이 이 동한 경우(투자)라며, 인력이동은 서비스 공급을 위해 자연인이 이동하는 것이다. 그 러나 일반적으로 인력이동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인력유입 문제를 양산하는 경 향이 있으므로, 선진국은 자국의 이민법 및 출입국 규정과 노동시장 보호 등을 위하 여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표 3-3> 한국의 WTO/DDA 인력이동(Mode4) 양허 현황

Mode 4				관련 비자	
구 분	자 격	범 위	체류기간	비자 종류	자 격
기업내 전근자	임 원	전근 직전 1년 고용	3년 필요시 연장	D-8	기업투자 관련자
	관리자				D-7
	전문가			D-3-1	
	연수생	미양허			
사업상 방문자	상업적 주재 설립	설립책임	90일 필요시 연장	C-2	단기상용
	서비스판매	공급책임			C-2
전문 인력	계약서비스 공급자 (CSS)	1년 이내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1년 이내 계약기간	E-1 ~ E7	단기취업 무역경영 전문기술 인력
	독립전문가(IP)	미양허			

자료: DDA 2차 수정양허안 및 법무부 사증발급편람을 토대로 필자가 정리

한국은 좁은 국토에 높은 인구밀도로 인하여 인력이동 개방에 소극적 자세를 취 하고 있다. FTA 협상에서도 WTO Plus를 추구하는 다른 분야와 달리 인력이동 양 허에 대하여 그간 DDA 수준의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다만, 최근 한-인도 CEPA 협상에서 제한적 범위 하에서 우수인력 유치를 허용하는 입장으로 전환하여, 최초로 독립전문가(IP: Independent Professional)를 제한적으로 개방⁴³⁾ 한 바가 있으 나, 중국과 인도는 지리적 근접성과 이미 중국 인력이 다

수 한국에 진출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인도에서의 개방방식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건설이나 엔지니어링 등 우리나라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자 격증 상호인정을 주로 선진국과 협상에서 적극적 태도⁴⁴⁾ 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개도국과의 협상에서는 국내 이해단체의 반발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중국과 협상에서도 동일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기체결 FTA가 대부분 개도국과 FTA였으므로 인력이동이 큰 이슈가 되지 않았다. 또한, 대만과 ECFA에서도 인력이동 양허를 스스로 요구하지 않아 조기 타결을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치적 배경이 강한 중-뉴 FTA에서는 인력이동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여, FTA에서 유래가 드문 일시고용입국⁴⁵⁾ 이라는 카 테고리까지 신설하여 인력쿼터를 배정받기에 이르렀다.

3. 투자 분야 쟁점

투자자유화 관련 쟁점과 전망

중-뉴 FTA와 한-중 BIT 모두 투자자유화 관련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 시 투자협상에서는 투자자유화 확대를 요구하는 한국과 이에 반대하는 중국입장이 핵심쟁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유화와 관련된 구체적 쟁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투자의 정의 및 범위와 관련, 설립 전 투자(Pre-establishment

43) 한국은 한-인도 CEPA 협상에서 최초로 독립전문가(IP) 형태로 제한적 요건 하에서 개방하여, 인도의 IT, 엔지니어 등 전문인력의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독립전문가는 각주 130의 계약서비스전문가와 유사하나, 다만 법인 소속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계약서비스 공급자가 법인 인 종합병원 소속 의사라면, 독립전문가는 개인병원 의사에 해당되며, 상대국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 공급을 위해 출입국하는 것을 가리킨다.

44) 한미 FTA에서 한국은 전문직 자격증 상호인정을 위한 부속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45) WTO GATS의 인력이동 부속서나 대부분 FTA 인력이동 양허는 원칙적으로 상대국의 노동 시장에 접근하는 노동인력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력이동이 불법체류를 통해 주로 선진국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존재한다.

Investment) 의 인정여부와 이에 대한 내국민대우(Pre-NT), 최혜국대우, 이행요건 부과금지 등의 의무의 적용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금까지 FTA 투자챕터 및 투자보장협정(BIT)에서 설립 전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등 투자자유화 요소의 채택선례가 없고, 경제정책 권한축소에 대한 국내적 우려, 유보안 작성의 전제가 되는 산업별 발전수준에 대한 평가 및 분류체계의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한국은 중국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며, 협상기간 동안 유보리스트(예외의 목록) 작성이 가능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중국에 투자자유화가 장기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이의 포함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⁴⁶⁾의 발표 등 중국은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해 정책적 권한 확보를 매우 중시여기고 있어, 관련 규제 철폐와 같은 완전 자유화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규제철폐 보다 규제의 신규도입이나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강화와 같이 중국 내 외국인투자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중-뉴 FTA나 한중 BI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은 지금까지 투자협정 관련,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및 이행의무 등에 있어 유보안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

비합치 조치에 대한 유보안 작성 대상도 일반적으로 내국민대우에 한정하고 있고, 그마저도 현존 비합치 조치(non-conforming measures)를 포괄적으로 유보하여 무엇이 중국 측 규제권한으로 유보된 것이고, 무엇이 개방되었는지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은 협정문상 의무조항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유보안 작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은 협정문과 위배되는 모든 조치(measures)에 대한 조사의 기술적 어려움과 투자정책에 대한 정부권한 침해에 대한 우려로 소극적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 PR) 부과금지와 최혜국대우와

46) 중국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업종별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지칭. 1995년 도입 이후 4차례에 걸쳐 수정하였고, 현재 적용되는 것은 2007년 수정판으로서, 외국인투자영역을 장려-제한-금지의 3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상기 조치는 설립전·후 외국인투자자의 내국민대우라는 원칙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에서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대표적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주요의무 관련해서도 양국의 의견차이가 예상된다. 특히 이행의무 부과금지 관련 사항은 중국 비즈니스와 투자에 있어 가장 심각한 장벽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기술이전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한중 BIT에 관련 조항⁴⁷⁾이 있으나, 문안이 너무 간단하여 구체적 사건에 적용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이에 한국은 한미 FTA 수준의 구체적 규정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은 WTO TRIMs 이상 의무는 부담할 수 없다고 소극적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혜국 대우와 관련해서도 서비스 분야와 마찬가지로 미래 MFN의 인정여부와 함께 규정에 동의하더라도 규정방식과 적용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끝으로 서비스 투자와 비서비스(제조업과 1차 산업) 투자에 대한 협정문 모델을 두고 의견차이가 예상된다. <표 V-28> 에서 보듯, 절충형 모델의 투자챕터는 원칙적으로 비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한미 FTA와 같이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를 추구하는 NAFTA 계열 투자협정문은 서비스와 비서비스업 투자를 막론하고 모든 투자를 투자챕터에서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유화를 선호하는 한국입장에서는 NAFTA 방식 협정문을 지향할 것이다. 다만, 한국은 한미 FTA와 같은 NAFTA 방식 이외에, 한-인도 FTA와 같은 절충형 모델도 채택한 바 있으므로, 투자협정의 모델에서는 한국의 유연성 발휘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겠다.

제2절 한·중 FTA가 양국에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

1. 모형 및 시나리오의 구성

CGE모형을 통해 분석

47) 제2조 3항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any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measures against the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 and disposal of the investments by the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nor impose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measures on investments by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concerning local content, technology transfer or export performance requirements.

한중 FTA 체결 시 예상되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CGE모형으로 GTAP 기본모형과 자본축적모형 두 가지를 이용하였다. GTAP은 세계 무역관련 CGE모형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모형으로 국내에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이 사용하는 범용 모형 37)이다. 자본축적(Capital Accumulation)모형은 GTAP 기본모형에서 자본이 중장기적으로 축적되어 다시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가정한 모형이다. 무역자유화로 증가된 소득이 저축되고 다시 투자되어, 중장기적으로 저축과 투자가 균형을 이루는 상태(steady-state)를 찾는 모형이다. Francois et al.

(1996)이 제시한 모형을 이용하여 자본이 축적될 때 저축률이 고정(Fixed Saving rate)됨을 가정한다.

GTAP DB의 139개 국가(지역)과 53개 산업은 재분류를 통해 총 27개 국가(권역)과 17개로 산업은 통합하여 FTA 체결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는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과 한중 FTA로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큰 대만, ASEAN 등의 신흥국들도 포함하였다. 산업 분류 및 통합(Aggregation)은 가능한 한국의 산업구조와 유사하게 구성하였다. 특히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섬유 산업 등 한국의 주력 산업들은 따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2. 거시경제 효과 분석

1) 한국의 GDP 2%~4% 증가

한중 FTA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농업과 제조업, 서비스업의 관세가 감축되는 시나리오별로 CGE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농업 50%, 제조업 100% 관세 감축, 서비스업 미개방을 고려한 시나리오 1의 경우, 한국의 GDP는 정태모형과 자본 축적모형에 따라 2.02~2.7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농업과 제조업 관세 100% 감축, 서비스업 미개방을 고려한 시나리오 2의 경우, 한국의 GDP는 2.02%~2.7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의 전면 개방은 GDP 증가 측면에서 한국에게 크게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

50%, 제조업 100%, 서비스업50% 개방되는 시나리오 3의 경우 한국의 GDP는 모형에 따라 2.89%~4.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과를 요약하면,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한국의 GDP는 개방의 정도와 모형에 따라 적게는 2%에서 최대 4%까지 증가할 것이다. 수입가격의 인하로 얻게 될 소비자들의 잉여를 의미하는 소비자 후생(Equivalent Variation)은 0.64%~1.9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3-4> 한중 FTA가 중국의 GDP와 후생에 미치는 영향

(단위: %)

구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정태	자본축적	정태	자본축적	정태	자본축적
GDP증가	0.11	0.35	0.14	0.37	0.17	0.40
후생증가	0.03	0.22	0.03	0.21	0.07	0.23

한중 FTA로 중국의 GDP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한국의 GDP 증가 정도보다는 작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 1의 경우 중국의 GDP는 0.11~0.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농업부문의 관세가 100% 감축되는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 2에서는 중국의 GDP가 0.14~0.3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에 상대적 우위가 있는 중국으로서는 농업부문의 관세인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업의 부분적 개방을 고려한 시나리오 3의 경우 중국의 GDP는 0.17%~0.4%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약하면, 한중 FTA가 체결되면 중국의 GDP는 개방의 정도와 모형에 따라 적게는 0.11%에서 최대 0.4%가 증가할 것이다. 이는 같은 모형과 시나리오를 고려하였을 때 한국의 GDP 증가율 2.0~4.0%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소비자 후생은 0.03~0.2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3-5> 한중 FTA가 중국의 GDP와 후생에 미치는 영향

(단위: %)

구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정태	자본축적	정태	자본축적	정태	자본축적
GDP증가	0.11	0.35	0.14	0.37	0.17	0.40
후생증가	0.03	0.22	0.03	0.21	0.07	0.23

한중 FTA로 한국의 對중국 수출은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나리오와 모형별로 32~34%의 對중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수산 부문을 전면 개방하면(시나리오 2) 관세를 50% 인하하였을 때보다 對중 수출은 소폭 감소한다. 이것은 완전균형 모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농산물의 관세가 더 많이 인하되면 수출을 위해 농업 부문의 생산과 무역에 자원을 더 쓰게 되어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이 오히려 둔화되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중국 농수축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 효과로 나타나는 수출 증대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對중 수입 증가율은 對중 수출 증가율보다 소폭 큰 34.96~38.36%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對중 수출 규모가 수입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출입 증가율 차이는 對중 무역수지 흑자규모를 더 확대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9년 한국의 對중 수출 규모는 869억 달러이고 수입 규모는 542.5억 달러인데 수출이 34%, 수입이 38.4% 증가한다면 對중 무역수지 흑자는 86.7억 달러 더 커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⁴⁸⁾

2). 한중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

FTA는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산업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기업은 각종 차원 측면에서 대응하게 된다. 중국의 무역 장벽 철폐를 통한 대중 수출 기회를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수출 증대 노력이 바로 수출면에서의 대응이다. 중국 무역 장벽의 동향은 수출 및 수입시장을 확립하였다. 자유무역

48)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GTAP v.7은 2004년의 글로벌 경제 상황을 포함하고 있고, 언제 새로운 균형이 이루어지게 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2009년 교역액을 기준으로 한 86.7억 달러의 對중 무역수지 증가는 실제 추정치가 아닌 예시이다.

협정을 통해서 한중 간 상호 시장 진입 비용 저하나 규모의 경제 효과에 의한 생산 비용 저하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수출 기업이나 수출상품의 증가는 물론, 잠재적 수출 기업이나 다양한 수출 상품의 증대가 가시화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무역 장벽 철폐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상품이 증가하는 경우 국내 내수 기업들의 시장이 그만큼 잠식된다. 한국 국내시장 자기 안정성, 자금부족, 불안정 확대, 이를 방어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구적 노력이다.

수입 대응력 강화는 자신의 경제적 약점 보호를 통한 시장 방어이다. 이것은 외국상품 및 외국인 기업에 의한 시장 잠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둘째는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한 기업의 제품 라이프 사이클 연장이다. 관세철폐에 따라 한국 기업의 자구책이 여의치 못할 경우, 기업은 라이프 사이클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하여 역수입 등을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이경우는 사업 규모의 축소 내지는 사업 전환이다. 위 상황에 관한 분석이 나오고 이써 기업은 사업규모의 축소, 나아가 소위 적극적인 산업조정 정책관점에서 산업 전환이 불가피하게 된다. 한국 국내의 주요연구서도 한·중 FTA가 체결되어 기존 각국의 관세율이 양국 간에 철폐될 경우, 양국의 실질 GDP는 모두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무역 수지 측면에서 중국의 경우에는 대 한국 전통산업의 자원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성형제품 수출이 확립되어 무역흑자 폭이 증가한다고 분석되고 있다.⁴⁹⁾

한 나라의 상품과 다른 나라의 상품(또는 재화)의 교환비율을 나타내는 교역조건 (Terms of Trade) 41) 은 0.9%~1.16%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한국의 수출 가격에 경쟁력이 더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총수출은 모형과 시나리오별로 2.61~4.29% 증가하여, 총수입 증가율 4.11~5.07%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GDP와 후생 등이 크게 나타나 소득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 중국 외의 타국으로부터의 총수입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

49) 장우 (2011),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p.33~34.

<표 3-6> 한중 FTA가 한국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단위: %)

구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정태	자본축적	정태	자본축적
교역조건	1.15	0.91	1.16	0.90
총수출	2.69	4.28	2.61	4.29
총수입	4.11	4.93	4.20	5.07
對중국 수출	32.19	33.99	32.11	33.98
對중국 수입	34.96	36.05	37.23	38.36

자료:실물 경제에서 교역되지 않는 서비스산업 관세상당치의 인하를 적용하는 시나리오 3은
未고려

3) 주요산업별 영향

한·중 FTA 체결은 기존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양국의 필요에 따라 현재 양국 경제교류에 걸림돌이 되는 비관세장벽, 반덤핑, 원산지규정, 세관통관절차, 지적재산권 등 제반 이슈에 대해 협상을 통하여 일부분 또는 전부분에 걸쳐 수정, 개선이 가능하다.

다만, 제조업에 있어서는 한국은 기술력과 자본에 있어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노동력에 있어서 경쟁우위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업종별로는 상이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대한국 관세율에 의하면, 중국은 한국에 대해 음식료품 및 담배산업(30.89%)에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25%)를 비롯한 수송기계(12.29%), 기타 제조업(11.01%)에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고무제품, 비금속광물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대중국 관세율을 보면, 농산물(57.5%)를 비롯하여, 축산업, 임업, 수산업 등, 농축수산업 부문의 관세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양국 모두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향후 한중 FTA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화가 추진된다면, 한국의 경우, 자동차산업 및 전기, 전자, 기계 산업 등에서의 교역확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또한 농축수산업에서의 수출증대가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2009)의 보고서에서도, 중국의 관세율이 한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한중 FTA가 체결되면 관세철폐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對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⁵⁰⁾.

분야별로 보면, 석유화학이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확보로 인한 수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철강부문에서 큰 폭의 수출확대와 공작기계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기계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업종별 효과

업종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자동차	- 국산부품 조달비용 인하로 현지 생산차의 원가인하 및 가격경쟁력 제고	- 완성차 수출증대 효과 제한적 - 글로벌 자동차업체 수출 및 저가 중국산 승용차의 국내시장 진출 우려 - 중국산 A/S부품 수입증가로 국내 중소 부품업체들의 구조조정 촉발
전자	- 효과 미미	- ITA(정보기술협정)적용으로 이미 무관세 이므로 수출입 증가요인 약함 - 중저가 가전 및 범용수입 급증 - 주요부품의 조립공정 후 완제품 역수입 증가 예상
일반 기계	- 공작기계를 중심으로 대중수출 증가 기대	- 공구, 금형, 베어링, 건설기계 등은 수입급증 예상
섬유	- 중국관세율 폐지 시 중국시장에서의 대만, 홍콩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 확보 기대	- 한국관세율 폐지 시 중국제품의국내시장 잠식이 저가제품에서 중가제품으로 확대예상
철강	- 고급제품은 큰 폭의 수출확대, 일반 강은 수입확대 예상	- 세계철강경기 하락 시 중국 저가 철강재 유입으로 국내 철강 산업 피해 우려

50)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한·중 FTA추진에 따른 주요 영향과 대응과제", p.172

석유 화학	-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로 수출증가 예상	- 중국의 에틸렌 설비 신증설이 일단락되는 2010년 이후 수출증가율 큰 폭 둔화 예상
정밀 화학	- 관세율만 비교하면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할 전망	-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범용제품의 경쟁력이 중국과 비슷해지고 있고, 고부가가치 분야는 선진국이 장악하고 있어 중국 진출 어려울 전망
중전 기기	- 효과 미미	- 관세철폐 시, 수출증가는 미미할 전망이나 중국산 일반 범용제품의 국내수입은 대폭 증가 전망

자료: 「한중 FTA추진에 따른 주요 영향과 대응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그리고 한·중 FTA체결된다면 농수산물의 경우 한국 수출도 증가하지만 수입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중 FTA로 인한 한국의 산업별 총수출 증감을 살펴보면, 석유화학과 섬유 산업의 수출증가율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타 기계류와 철강 및 기타 금속제품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조업의 경우 한·중 FTA로 석유화학, 섬유, 기계, 철강 산업의 생산이 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광업과 자동차, 전자산업의 생산은 감소할 것이다. 중국의 제조업 부문 산업생산은 석유화학과 자동차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중국의 전자 산업과 식품 산업의 생산 증가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3-8> 한·중의 산업생산액 변동

(단위:%)

구분	중국	한국
농산물	0.4	-1.2
축산물	0.1	0.9
수산물	0.3	-0.4
식품	0.7	0.1
전자	1.2	-0.9
철강	0.1	1.0

광업	0.1	-1.6
석유화학	-0.2	4.0
자동차	-0.1	-1.2
섬유	0.5	5.7
제지	0.1	0.4
기계	0.1	2.7
기타금속	0.5	0.8
기타제조	0.2	-0.4

주: 농업50%, 제조업100%관세인하의 자본축적 모형결과 기준

또한 한·중 FTA로 체결된다면 한국의 쌀에 대한 관세 감축 예외 시 쌀 생산을 증가, 수입을 감소를 추정된다. 2010년 현재 한국의 쌀은 시장자유화 예외 품목으로 최소시장접근⁵¹⁾(MMA: Minimum Market Access)에 의해 수입되고 있다. 한·중 FTA 협상에서도 쌀에 대해 관세 감축 또는 철폐를 하여 수입할 것 인가가 쟁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쌀의 관세를 50% 감축할 경우 한국의 쌀 생산을 2.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해, 예외 품목이 될 경우 0.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쌀의 수입은 관세 50% 감축 시에는 33.5% 증가하지만, 예외 시에는 2%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한·중 FTA시 쌀의 관세화를 하지 않는다면 쌀 생산은 오히려 증가하나, 다른 농산물의 생산은 더 크게 감소하게 되는 상충관계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3. ASEAN,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 주는 영향

대만이 거시경제적으로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국가

한중 FTA가 체결되면 동아시아 국가 중 한중과 상호 교역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일본, ASEAN, 대만 등의 국가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특히 대만이 받는 거시 경제적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의 GDP는 0.47%, 소비자 후생은 0.22%, 교역조건도 0.1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ASEAN의 GDP는 0.21%, 소비자 후생은 0.12% 감소할 것이다.⁵²⁾ 3개

51) 최소시장접근이란 해마다 정해진 물량을 시장 가격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52) 한중 FTA가 동아시아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만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2006

국가(권역) 중 일본이 충격을 가장 작게 받을 것으로 분석되는데 일본의 GDP는 0.11%, 소비자 후 생은 0.02%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일본, ASEAN, 대만의 수출입도 대체효과, 소득효과 등으로 인해 변화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출이 1%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에 한국과 중국으로 수출되던 농수산물이 한중 FTA로 한중 간 교역이 증가하면서 일본산 농수산물을 대체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제조업 중 섬유, 식품, 석유화학 등의 산업의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ASEAN의 경우, 농수축산물의 수출은 증가하지만 석유화학과 섬유 산업이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만의 경우 석유화학과 섬유 산업의 수출이 1%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은 모든 국가와 산업에 걸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음(-)의 소득효과가 나타나고, 한중 간 교역이 늘면서 한국과 중국이 이들 국 가로 수출하는 물량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표 3-9> 한중 FTA가 일본, 아세안, 대만의 산업별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단위: %)

구분	총수출			총수입		
	JAPAN	ASEAN	TAIWAN	JAPAN	ASEAN	TAIWAN
농산물	-1.86	0.00	0.06	-0.10	-0.41	-0.45
축산물	0.43	0.68	1.72	-0.19	-0.39	-0.97
수산물	-1.75	0.28	0.68	-0.23	-0.15	-0.25
식품	-1.00	-0.09	0.22	-0.16	-0.17	-0.40
광업	0.90	0.35	1.22	-0.10	-0.40	-0.82
전자	-0.12	-0.34	0.03	-0.24	-0.29	-0.29
철강	0.26	0.06	-0.28	-0.79	-0.19	-0.46
석유화학	-0.53	-0.76	-1.67	-0.26	-0.28	-0.83
자동차	0.23	0.10	0.30	-0.16	-0.18	-0.35
기계	-0.34	-0.33	-0.85	-0.37	-0.23	-0.56
섬유	-4.13	-0.58	-1.56	-0.21	-0.33	-1.09
제지	0.13	0.12	0.80	-0.23	-0.18	-0.38
금속	-0.35	-0.19	0.34	-0.36	-0.27	-0.47
기타제조	-0.24	0.02	0.72	-0.31	-0.29	-0.59

주: 시나리오 1(농업 50%, 제조업 100% 관세인하)의 자본 축적 모형 결과 기준

년 타결된 중 -아세안 FTA와 2010년 중국과 대만 간 ECFA의 관세 감축은 모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제4장 한·중 FTA의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

제1절 한·중 FTA의 상품에 대한 대응방

1. 중국의 대응방안

1) 농업분야

(1) 농업정책의 개혁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농민간의 소득격차는 확대되고 급속한 이탈농으로 농촌지역의 활력은 저하되고 있다. WTO 가입등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농산물가격의 하락과 농가소득의 감소가 전망되어 농민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은 과거 또는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과 매우 유사한 농촌지역의 공동화와 도시지역의 과밀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력의 노령화로 시장개방에 대응한 구조조정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중국의 농업정책

중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제10차 5개년 계획중 농업정책의 목표와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농정목표는 (1) 농외소득 기회의 확대를 통한 농민구간의 소득 증대, (2) 생태환경 보호의 강화, (3) 농업과학기술의 발전 등이다.

따라서 수출시장에서 안정적 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 여건변화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가격에 일정한 물량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면, 이에 합당한 농산물의 생산 및 공급체계와 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농산물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 및 판촉활동과 불량식품의 반품과 같은 철저한 수후관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다음과같은 국내보조 정책을 도입하는것도 나쁘지않을 것이다.

- 첫째,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보를 위한 보상지불
- 둘째, 소득안정 제고를 위한 보조
- 셋째, 소규모 가족농에 대한 지원
- 넷째, 개도국의 농업 및 농촌개발을 위한 보조

2)제조업 분야

중국은 무역결합도지수 분석결과를 보면 중국의 화학, 의류, 철강금속은 큰 무역결합도 품목이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결합도지수가 중국의 대한국 무역결합도지수 보다 좀 높으니까 중국은 한국대외 무역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예측한다. 무역특화지수 TSI분석 결과를 보면 중국이 상대적으로 수출지향적인 제품은 기계부품, 철강과 비철금속품목이다. 현시비교우위지수 분석결과 중국의 비교우위 상품은 피혁제품과 목재가구로 나타났다. 중국 제조업을 더 활발하게 발전하기 위하여 다음방안을 제시한다.⁵³⁾

(1)제조업 산업구조 확대

한중 FTA 체결되면 중국은 산업구조의 조정이 요구된다. 중국 제조업은 규모는 최대이지만 최강은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시급하다. 그리고 중국은 현재 주로 조립 위주여서 부가가치가 상당히 낮고, 연구 개발, 브랜드 판매, 애프터서비스 분야에 들인 노력이 적기 때문에 제조업 가치사슬을 시급히 확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제품 개발

한중 FTA가 체결 후 금형, 발저설비, 공작기계 등 민감 품목의 경우 중국에 대해서는 경쟁우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중국수요자의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맞춤형 제품을 공급하는 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중국 현지에서 생산과 국내 생산 부문을 구분하여 범용제품과 핵심제품의 개발 및 판매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원자력 발전 연구는 선진국과 기술협력이 필요하다

53) 손학기 (2010),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88.

다.

(3)인재양성

산업고도화를 위한 선진 제조업의 첨단 신기술을 수용하려면, 높은 소질과 기술 함량을 갖춘 대량의 인재가 필요하다. 특히 과학기술 지식을 갖춘 고급 기술자가 필요하다.

2. 한국의 대응방안

1)농업분야

(1)농업 구조조정

농업 구조조정 방향은 농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농지와 인력 및 자본 등 경쟁력을 갖추었거나, 잠재력을 갖고 있는 노업 경영체에 집중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선택된 경쟁력 있는 선진농가를 집중 지원하여 전업농으로 육성하는 한편, 경쟁력이 있는 지역의 전문화를 촉진해야한다. 또한 경여이 양직 불제를 보완하여 고령농의 조기은퇴를 유도하고, 신규 창업농을 육성하여 경영능력을 갖춘 신규농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진보와 경영혁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가의 경영규모를 확대하며 지역별 특화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업 구조조정이 보다 유연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농업소득 이외에 농외소득기회가 늘어나는 구조를 확립함과 도시에 영세 고령농가 등 시장경쟁에서 탈락하는 농가나 조건 불리지역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⁵⁴⁾

(2)정부지원

정부의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대책의 기본원칙은 WTO 규범과 일치한다. 농수산업 분야의 직접적 패해보전으로 "소득보전 직불제"와 "폐업지원금 제도"가

54) 류명명 (2008), p.77

있다. 소득보전 직불제는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농수산물조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피해의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폐업지원금 제도는 FTA로 인하여 농어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농어가에 대하여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55)

(3)농업경쟁력 강화방안

농업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쌀 같은 곡물류를 제외하고 기술집약적이고 자본집약적인 원예, 과수 분야에서는 단순히 수세적인 입장외에도 해외 시장을 겨냥한 공격적인 전략 수립으로 국내 농산품의 경쟁력확보와 동시에 수출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우선 정부 주도의 가격지지를 시장 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경쟁력 증대를 하기위한 조치로는 미래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을 중점 육성하는 것이다. 후계자 육성 이외에도 신규 창업농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현행 후계농업인 제도를 개편하여 창업농위주로 전환하고, 영농정착자금도 대폭 증액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한 젊은 인재를 창업농으로 중점 선발하는 정책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농업인의 경영실태를 평가하여 우수 농가를 선별지원하고, 농업인 법인경영체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강화하고, 마을 단위의 공동컨설팅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시장원리가 잘 작동될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혁신해야 할 것이다. 쌀 산업의 경우 규모화 등 농업경쟁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농지 소유와 이용 제도를 혁신해야한다. 네 번째로는 경쟁력강화를 위한 새로운 농업 성장 동력창출이다. 지방대학,산업체, 연구기관이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컨설팅을 수행하는 지역농업크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특화작목개발, 교육, 기술 컨설팅, 신기술 창업지원, 지역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해야한다. 56)

2)제조업 분야

55) 박설혜 (2011), "한중 FTA협상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p.66

56) 앞 글, p.80

한국은 무역결합도지수 결과를 보면 의류와 비철강금속제품이 가장 큰 무역 결합도 품목이다. 무역특화지수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수출지향적인 제품은 철강,인조장섬유, 신발류와 의류 등이다. 현시비교우위지수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의 비교우위 상품은 선박, 통신기기, 정밀기기와 자동차 및 부품이다. 한국 제조업을 더 활발하게 발전하기 위하여 다음 방안을 제시한다.⁵⁷⁾

(1)적극적인 수출 마케팅의 전개

한중 FTA 체결의 효과는 무엇보다도 한국 제조업에 대한 중국 시장이 더 넓게 개방되어 수출이 증대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폭넓은 시장개방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특화한 제품들에 대해서 특화도를 높이고 FTA상대국에 대한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 첫 번째 대응책이 되어야한다. 즉, 한국의 강한산업들은 중국시장의 확대를 이용하여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새로운 산업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전자산업 기술협력

현재 고위기술 산업의 경우 중국은 수입부품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한중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자부, 기술집약적 산업구조의 고도화 또는 고부가 가치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는 기업과의 기술 및 투자 협력 등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하며, 국내업체들과의 기술협력 등이 요구된다.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금형, 유저인터페이스 등 소프트웨어 경쟁가격의 강화를 들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사업 및 산, 관, 학 협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품,소재 기업 대부분을 중소기업의 대형화와 대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3)일반기계 중소기업 기술력을 개발

한국의 주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영세업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요 수출품목도 한정되어 있는 실정으로, 중국 등 세계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취약하다. 그래서 일반 기계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

57) 손학기 (2010), "한국 FTA 추진의 전망과 과제", 『KIEP 세계경제 5월호』, 석사논문, p.86.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육성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집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4) 혁신 철강공정기술 개발

향후 역내 및 세계 철강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제철공정기술을 조기에 개발한 필요가 있다. 혁신 제철공정기술은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환경공해물질을 감소시켜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혁신 제철기술 자체의 라이선스를 통해 로열티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현재 국내 주요 철강업체가 그러한 혁신 제철공정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F&D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더욱 박차를 가하여 조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석유화학제품의 대 중국 장기전략 수립

지난 10년간 중국은 한국 석유화학업계에 엄청난 호재로 작용하였다. 중국의 석유화학제품의 공급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의 과잉공급물량은 중국시장에서 해소될 수 있다. 향후의 대중 투자전략 수립시 투자 대상품목의 인접국 설비를 포함한 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형화 및 계열화된 실비투자가 아니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원료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제2절. 서비스분야에서의 한국의 대응방안

1) 서비스업 개방의 고려 대상

서비스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저장이 불가능하고, 특허와 같은 법률적 보호가 어려우며, 상품으로 제시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가격결정 능리가 불분명해진다. 과거에 서비스는 산업특성상 기술수준이 낮고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아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

58) 부유 (2012), p.89.

는 부문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특히 1990년대 들어 상품에 내재되던 서비스 기능이 분리되고 특화된 독립적 전문업체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이를 공급하면서 생산성이 증대되고 원격지 조달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사업서비스, 금융 및 보험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중요성이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다양한 서비스부문 중 특히 디자인, 금융, 통신, 유통 및 운송 서비스 등 생산자서비스와 인프라서비스 등 최신 서비스부문은 그 자체가 최종서비스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조업부문의 기본적인 투입요소가 된다. 따라서 서비스부문이 발전되지 않는다면 한중 양국이 현재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제조업부문의 지속적인 성장 및 고부가가치화가 불가능할 수 있다.

서비스 수요는 재화와 달리 저장이 불가능해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국내에서 최종 소비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대외 환경변화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다. 따라서 거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 경기 및 고용의 변동성이 완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제의 서비스화는 경제 각 부문에서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증대되는 현상에서 찾을 수 있다. 서비스부문이 세계 및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대, 높은 고용창출효과 및 서비스부문의 수출비중 증대를 생각할 수 있다. GDP에서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증대되며, 대체로 각국 GDP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GDP에서의 서비스 비중은 선진국과 개도국 각각 평균 72%, 49%이며, 이비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⁵⁹⁾

무역특화지수(TSI) 및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종합하여 부문별로 평가한 결과, 한중은 상품부문에서 경쟁우위를 갖지만 서비스 부문에서는 경쟁열위를 보였다. 같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한중 양국의 서비스부문별 상대적 경쟁우위 성장추세를 감안하여 비교한 결과 중국은 여행과 기타사업 등 2개 서비스부문에서, 한국은 운송 및 기타 사업서비스 등 2개 부문에서 경쟁우위를 보였다.

현재 진행중인 WTO의 GATS 협상 과정에서 제출된 수정 양허안은 한중 양국의 서비스부문별 자유화 수준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한중 양국이 개방을 유보하는 부문은 정치, 경제적으로 민감한 부문이라고 간주하여 분석될

59) 윤창인 (2009), "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협상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12,에서 인용함, p.188

수 있다. 한국은 총 12개 분야, 155개 서비스업종중 10개 분야, 104개 업종을 개방하기로 약속하여 개방규모는 67% 정도로 평가된다. 중국은 10개 분야, 98개 업종에 대해 양허하여 개방수준이 63% 정도에 이르고 있다. 개방을 유보한 부문, 즉 한중 양국의 민감부문은 한국이 7개부문 중국은 5개 부문이다.

2) 서비스업 개방의 방향

서비스 자유화는 민영화와 경쟁의 도입을 의미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상품 무역과는 반대로 서비스의 경우 지역협력을 통하여 무역전환을 일으키지 않고 다자협상보다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사한 국가 집단간에 국내규제 측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상호 인정 및 조화의 형태로 실질적인 협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자문화권, 유교와 불교로 이어지는 종교적 유대 및 인습과 제도 측면에서 타 문화권에 비해 비교적 유사성을 지닌 한중간의 지역협력은 범세계적 접근보다 서비스 자유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OECD 각료회의는 'Enhancing Services Sector Performance'에서 신규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혁신 및 생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서비스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국제적인 시장확대조치를 일방적 혹은 다자적으로 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생산자서비스를 발전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상황이며,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는 FTA 등을 통하여 서비스 부문을 개방하는 것이다. 서비스부문의 규제 철폐와 자유화는 한중 각국이 스스로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WTO의 서비스협상 혹은 한중 FTA의 서비스부문 개방으로 가속화되고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생산자서비스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제조업 및 여타 비즈니스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생산자서비스는 첨단제출은 물론 제조업부문에서 세계적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한중 양국에 매우 중요한 서비스이며, 당연히 한중 양국서비스부문 FTA에 1차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대상이다. 한중 양국은 대체로 건강관련 서비스, 시청각서비스 중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오락 및 문화 서비스 등을 민감한 부문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민감하다고 분류하는 서비스부문은 상품부문 경쟁우위 유지 및 서비스부문 경쟁열위 극복과 김밀한 관

계를 갖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부문들은 제조업 혹은 국제무역과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약한 부문이기 때문에 한중 FTA서비스부문 자유화에서 각국의 시장상황에 따라 유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서비스부문 자유화를 통하여 서비스산업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규제 완화 및 독점 제거, 가격 자유화, 인력 양성, 경쟁 촉진 등이 강조되고 있다. 서비스 자유화로 기대되는 이익은 서비스 자유화로 나타나는 해외시장 접근의 개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시장개방에 따른 경쟁 및 효율 증대에서 찾을 수 있다. 환언하면, 서비스 자유화의 이익은 해외시장에 대한 수출장벽 제거에서 오는 이익이 아니라 국내외 모든 기업의 서비스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국내개혁과 경쟁체제 도입에 있다는 것이다.

한중 FTA를 통한 서비스산업 부문의 개방은 양국의 후생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답보상태를 보이는 WTO의 서비스협상보다 앞서 더 깊고 범위가 넓은 자유화를 목표로 추진하여야 한다.

비슷한 문화적 배경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갖는 한중은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통한 경쟁의 도입으로 서비스 비용과 가격을 낮추어 서비스부문의 효율 제고를 도모하고 혁신시키는 동시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폭을 넓혀야 한다. 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생산자서비스 및 인프라서비스를 중간 투입요소로 활용하는 여타 서비스 및 상품 부문의 경쟁력이 강화 될 것이다.

요약한다면, 한중 양국은 FTA를 통한 적극적인 서비스 자유화가 필요 하며, 이 자유화는 한중 양국의 서비스부문 경쟁력 향상은 물론 상품부문의 경쟁우위 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⁶⁰⁾

제3절 투자분야의 대응방안

투자 분야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겠다. 중국기업이 대한투자의 영역을 확장해야 하며 대한투자를 기술적 진보의 추진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와 결합하여야 한다. 최근의 투자 중심은 강철, 자동차, 석유, 전자, 통신, 기계를 위주로 하여 중장기에는 항공, 통신, 고급전자 등 산업의 합작을 부각시키며 동시에 자원개발, 금융, 운송,

60) 류명명 (2008), pp.68~69.

고기술 등 영역에서의 합작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 이외에 중국기업이 한국에서 연구개발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한국의 기술인재 활용하여 한국의 기술자원을 이용함으로써 기술창조를 전개 하게한다. 현재 한중 무역적자의 확대는 중국의 대한투자 규모협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한중 무역적자를 축소시키고 한중 무역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외진출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투자로 수출을 이끌어 수출무역을 촉진해야 한다. 특히 최근 몇 년 간에 중국의 민영기업은 자본 및 기술력에서 큰 발전이 있었다. 동시에 세계 경제 산업라인 및 국제경제 협조에 자발적으로 융합되고 있고, 비교적 높은 해외투자에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동시에 민영기업 중소기업의 대한투자도 격려 하여야 하며, 한국에서 더 많은 발전 기회를 획득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연합투자 중소기업 및 대기업 연합투자방식으로 직접 투자를 해야 한다.

제5장. 결 론

한중 양국이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벌써 20년이 넘었다. 이제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서로에게 중요한 협력 국가가 되었다. 중국은 한·중 대외무역 총액의 20% 이상을 차지하여 제1의 교역국이자 제1의 투자대상국으로 떠올랐다. 한국 또한 중국에게 제3의 교역국이자 제2의 투자 제공 국가가 되었으며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양국의 외교수립당시 '우호협력 관계'에서 2003년 '전면 협력동반자' 단계를 거쳐 양국관계는 한층 더 격상되었다. 한·미 FTA 협상 발효이후 중국당국이 협상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는데다 한국에서도 한·중 FTA체결이 불가피한 공감대가 형성하고 있다. 2008년 5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합의에 도달하여 협상개시는 이제 시기의 선택만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한중 FTA에 대한 국내의 관심도 고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중 FTA는 한국 사외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둘러싸고 양국 모두에게 상당한 수준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대부분 기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한중 FTA체결시 중국의 GDP증대보다 한국의 GDP증대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수출입 효과에서 대부분의 연구가 제조업 부문에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증대될것으로 분석했다. 중국도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중 FTA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준이 다소 낮아지고 있다. 오히려 분석결과 한중 FTA실익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뿐더러 제조업중심으로 오히려 한국 시장만 중국에게 내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기도 했다.

세계경제의 세계화와 지역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향후 발전을 고려할 때 한중 FTA 이행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중 양국은 아시아 경제협력에

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로서 양국 간 FTA를 아시아 지역경제협력을 추진하여 한중 2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협력을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관계는 수교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해왔고 중국은 이제 한국의 명실상부한 제1의 교역대상국이 되었으며 급진적인 경제 관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경제부분에서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한국의 대 중국 의존도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 성장 되고 있다.

한중 FTA체결로 가장 우려 되고 있는 산업분야는 농,축,수산업이다. 현재 양국의 농,축,수산업의 교역 특징은 중국이 일반적으로 수출하고 한국은 일반적으로 수입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농업문제의 특수성에 기초해 볼 때 한국 농업의 특수성이 인정되지않은 제약 없는 FTA가 협상될경우 일방적으로 농산물 산업이 수입확대되어 한국 농산위에 충격을 가져올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한중 FTA 협상에서는 매우 신중한 경제적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며 한중 FTA는 자유무역 뿐만아니라 투자 및 서비스 등 다양한 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가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남영욱 (2004), "한·중 FTA 경제적파급효과 와 주요쟁점",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 류명명 (2008), "한·중 FTA 추진에 따른 경제적 대응방안에 관한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부 유 (2012),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박설혜 (2011), "한·중 FTA 협상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경영 대학원, 석사논문.
- 박순찬 (2011), "한국 FTA 추진의 전망과 과제", 『KIEP 세계경제 5월호』.
- 박번순 (2012),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 연구단 국제학술회의, 2012년 제5호.
- 시 빙 (2009), "한·중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서 도 (2008), "동북아 FTA 경제의 효과와 정책시발점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손창의 (2002), "한·중 FTA 경제의 효과와 정책시발점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서 비 (2011), "한·중 FTA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1.
- 손학기 (2010), "한·중 FTA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효성 (2010), "한·중 FTA 추진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 천 (2010), "한·중 무역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 검 (2010), "한·중 무역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유연정 (2010), "한·중 FTA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종원 (2002), "한·EU FTA 경제의 효과와 정책시발점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기성 (2010), "한·중 FTA 추진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임용남 (2010), "한·중 FTA의 주요 쟁점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윤창인 (2009), "한중일 FTA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및 서비스협상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12.에서 인용함.
- 양평섭 (2008),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KIEP 연구보고서 제07-08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인교 (2010), "FTA 통상론", 서울출판사.
- 장명비 (2011), "중국 전자산업의 발전과 한중 전자산업의 협력",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장 녕 (2012), "한·중 자유무역 협정(FTA)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대학원, 석사논문.
- 조일윤 (2010), "한·중 FTA의 주요쟁점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张 翊 (2010), "중국시장에서의 한국 자동차 산업 경쟁력 분석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田浩国 (2011), "한·중 FTA의 필요성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일반 대학원, 석사논문.
- 팽 옥 (2012), "한·중 FTA 추진전략에 대한 연구", 제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허홍조·정윤세 (2009), "한중 FTA에 대한 한중양국의 입장", 『경영사학』 24호 제24집.
- 홍전욱 (2008), "한·중 FTA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중국사이트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 <http://www.mofcom.gov.cn/>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 : www.mofcom.gov.cn

인터넷

네이버 통합검색 : www.naver.com

농수산물 유통공사: <http://www.at.or.kr>

네이버 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외교 토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중국 상무부 통계: <http://www.mofcom.gov.cn/>

중국인민은행: www.pbc.gov.cn

중국해관통계: www.customs.gov.cn

자료: <http://cafe.naver.com> 중국정보 공유카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자도서관 <http://library.krei.re.kr>

한국관세청 통계: www.customs.go.kr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FTA종합 지원포털사이트: www.ftagub.go.kr